

2 15 2015

學國침투 北愧간첩단 打盡

情報部 발표 騷擾·煽動 등 背後조종

地下學生網 구축

재일동포 정치범 사건-11.22사건- 40년 토론회

“우리는 왜
‘간첩’이 되었나?”

재일동포 정치범 사건을 통해 본 한국 사회와 재일동포의 삶

- 때 : 2015년 10월 19일(월) 13:30-17:00
- 곳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관 : 재일동포 정치범 사건 재심 변호단, 포럼 진실과 정의
- 주최 : 4·9통일평화재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원회,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 역사 정의실천연대,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재)진실의힘

포럼 진실과 정의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83 금은빌딩 3층 민족문제연구소 내
T. 02)2139-0408 E. truthnjustice@hanmail.net

재일동포 정치범 사건-11.22사건- 40년 토론회
“우리는 왜 ‘간첩’이 되었나?”

재일동포 정치범 사건을 통해 본 한국 사회와 재일동포의 삶

13:30 개회사

13:40 기조강연 “조국이 버린 사람들”과의 만남
- 김효순 (포럼 진실과 정의 대표)

14:10 피해자들과의 대화 “우리는 왜 ‘간첩’이 되었나?”
사회 : 이유정 (변호사, 포럼 진실과 정의 운영위원장)
대화 손님 : 강종현, 김원중, 김정사, 마쓰모토 유리

15:10 휴식

토론회

사회 : 홍순권 (동아대, 포럼 진실과 정의 대표)

15:30 발표 1 : ‘재일동포 정치범’ ‘한국’ 사회에 무엇을 제기하는가?
- 권혁태 (성공회대)

15:50 발표 2 : 재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 그 인권회복을 위한 여정
- 조영선 (변호단)

16:10 토론 : 조경희 (성공회대), 이재승 (건국대), 장경욱 (변호단)

17:00 폐회사

차례

4 기조강연

“조국이 버린 사람들”과의 만남
- 김효순(포럼 진실과 정의 대표)

11 피해자들과의 대화

“우리는 왜 ‘간첩’이 되었나?”
- 대화 손님 소개 : 강종현, 김원중, 김정사

12 발표 1

‘재일동포 정치범’, ‘한국’ 사회에 무엇을 제기하는가?
- 권혁태(성공회대)

20 발표 2

재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 그 인권회복을 위한 여정
- 조영선(변호단)

45 참고자료

한국의 ‘민주화’ 속의 재일한국인
- 기무라 다카시(규슈국제대)

'조국이 버린 사람들의'과의 만남

김효순 포럼 진실과 정의 대표

1 '버려진 백성'이라는 피해의식

재일동포에 대한 한국인들의 평균적 인식은 아주 빈약하다. 그것도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오해와 편견에 가까운 것이 많다. 파친코 등 오락산업으로 돈을 번 '졸부'라든가, 일본인에 빌붙어 사는 '반쪽바리'라는 차별적 딱지를 붙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재일동포의 한 사람인 김성근 프로야구 감독은 모국에서 받은 차별과 모멸을 서슴없이 털어놓는다. 그는 한국 땅에서 입지를 굳히기까지 오랜 기간 '반쪽바리'라는 음습한 시선을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됐다.

한국인들은 재일동포들이 일본 사회에서 겪었던 정신적 고통을 잘 모른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김성근 감독은 교토의 가쓰라고교를 졸업하고 바로 건너와 일본 프로야구의 화려한 무대에 서본 적이 없지만, 1980년대 중반 삼성 라이온즈 프로야구팀에서 활약했던 김일웅은 고등학교 재학중 명문 요미우리 자이언츠팀에 스카우트될 정도로 재능을 인정받았다. 그가 정식으로 요미우리에 입단하기 전에 가족회의가 열렸다. 요미우리 구단에서 귀화를 종용했기 때문이다.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가족회의는 결국 김일웅 혼자 귀화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그가 모국에서 자랐다면 10대 후반의 나이에 결코 마주치지 않았을 운명의 다리를 넘은 것이다.

재일동포 사회에서는 모국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는 의식이 널리 퍼져 있다. 내가 '기민'(棄民)이라는 낯선 말을 접하게 된 것은 한겨레신문의 초대 도쿄특파원으로 부임

한 지 1년이 지난 1993년의 봄이다.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말이나 '버려진 백성'이란 뜻이다. 당시 나는 일본의 신문·방송 보도를 연일 중계방송하다시피 하는 판에 박힌 특파원 생활에서 벗어나 간사이지방에 머물면서 재일동포사회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취재하고 있었다. 그때 만난 재일동포 지역사회 활동가들은 '기민'이란 단어를 자주 썼다. 본국 정부의 재일동포 방침에 대해 한마디로 '기민정책'이라고 했다. 본국 정부가 재일동포의 삶이나 권익증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단지 협상 거리로 삼아 일본 정부로부터 다른 이득을 취해가기만 했다는 것이다. 한일협정 체결 때 이동원 외무장관이 재일동포에 대해 "조만간에 다 일본으로 귀화할 사람들"이라고 짚아내린 것이 기민정책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본국 정부에 대한 기대를 묻자 "우리를 더 이상 팔지 않기를 바랄뿐"이라고 냉랭하게 말했던 한 활동가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다수의 민단계 동포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기민의식'은 뿌리 깊다. 본국 정부로부터 피부로 느낄 만한 혜택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말 교육기관의 태부족 현상이다. 우리말로 가르치는 학교는 대부분 종련계로 분류된다. 민단계 동포의 자제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어쩔 수 없이 일본 학교에 들어가 일본식 이름(통명)을 쓰며 일본인처럼 행동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같은 연령대의 본국인이라면 겪지 않을 정신적 흥역을 앓고 그 내재적 상흔은 오랜 기간 남는다. 취재과정에서 만났던 30대의 한 여성은 "어릴 때부터 내 속에 있는 마음의 분열상황이 쓰라려 통일된 인격을 갖고 싶었다"고 말했다. 30대 남성으로 부터는 '민족적으로 사는 것이 정지돼 있는 상황'에 놓인 고통을 들었다. '국적조항'의 장벽을 뚫고 동포사회에서 처음으로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김경득씨가 사법연수소에 입소시켜 달라고 최고재판소(대법원)에 낸 청원서는 구구절절이 자신의 내면의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조선인으로 태어난 것을 원망해 나의 몸에서 일체의 조선적인 것을 배제하려고 애썼다. 소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는 동안 일본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습성이 됐다. 그러나 일본인의 차별을 피하기 위해 일본인처럼 가장하는 것은 대단히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대학교 졸업이 가까워지면서 나는 조선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변에 신경을 쓰며 소심하게 살아가는 것의 비참함을 참을 수 없게 됐다."

2 '기민 중의 기민' 재일동포 유학생 정치범

1970~80년대 수시로 발생했던 재일동포 유학생 정치범사건들을 다룬 출저 <조국이 버린

사람들>이 출간된 것은 지난 7월말이다. 나는 작년 여름부터 이 책의 원고 집필을 서둘렀다. 가장 염두에 뒀던 목적의 하나는 '11·22사건'이란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되살리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11·22사건 40주년을 맞는 올해 안에 책이 기필코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11·22사건이란 중앙정보부가 1975년 11월22일 개별적 사건으로 발표하던 종래의 방침을 바꿔 20여명의 유학생 '간첩'들을 한데 묶어 대대적으로 터트린 데서 유래한다. 일본에서 11·22사건은 유학생 정치범들의 고난을 상징하는 말이 됐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유학생 정치범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치유를 꾀하는 본격적인 시도는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런 의미에서 11·22사건 40주년을 앞두고 재심변호인단과 포럼 진실과 정의를 비롯한 과거사 관련 단체들이 협력해 오늘의 행사를 연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유학생 정치범들은 대체로 일본에서 고교, 또는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모국을 찾은 동포 2세들이다. 동포 1세들의 문맹율이 70%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2세들의 교육수준은 크게 올라갔으나 평균치는 중학교 졸업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추정된다. 그런 점에서 유학생 정치범들은 '간첩' 사건에 휘말려들기까지는 2세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유복한 측에 속했다고 할 수 있다.

김경득 변호사는 11·22사건의 희생자들과 연령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 그의 정신적 방황과 번민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동포유학생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유학생들이 모국을 찾은 동기는 자신의 혼란스런 정체성을 찾기 위한 것이 많다. 총련계 학교 졸업생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길은 봉쇄돼 있었기 때문에 모국 유학생들은 대부분 일본인 학교를 다녔다. 그 과정에서 정신적 방황을 겪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변에서 동포가 '이지메'를 당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봐야 하거나 수업 시간에서 '추한' 조선인이나 조선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급우들의 따가운 눈총이 쏠리는 것을 감내해야 했다. 자의식이 강해질수록 우리말 우리문화를 모르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 모멸감은 더욱 커졌다.

당시만 해도 한국에 유학한다는 것은 주변에 자신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었다. 일본인이 한국에 공부하러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번민 끝에 새로운 희망을 찾아 모국유학에 나선 이들이 마주친 것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었다. 더구나 공안기관의 견지에서 이들은 '잠재적 대공용의자'에 지나지 않았다. 검거된 북한 공작원의 다수를 차지했던 남파간첩이 1972년의 7·4공동성명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자 공안기관은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서 자신의 존재이유를 증명해야 했다. 독재정권의 수

뇌부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저항을 통제하기 위한 국내정치적 이유로 공안기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기관이 가장 먼저 눈길을 돌린 대상이 재일동포 유학생이었다.

사상의 자유가 존재하고 '물리적 38선'이 그어지지 않았던 일본 땅에서 자라난 이들은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의 잣대로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을 사람이 없었다. 일가친척이나 주거지 인근의 이웃 가운데 총련계 사람이 있기 마련이었고, 극도의 반공체제가 유지됐던 모국과 달리 유학생들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구미의 선진국을 훑쓸었던 6·8혁명이나 베트남반전 운동의 열기를 접했던 경험이 있었다. '출판대국'이었던 일본에서는 세계의 첨단을 가는 사회과학서적이 큰 시차를 두지 않고 번역돼 나왔고, 언론에서도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넘쳐났다. 유학생들이 박정희 정권을 보는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이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모국 대학생들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섰던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행동했을 경우의 위험성을 여러 경로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보기관의 내밀한 내사과정을 거쳐 '간첩 용의자'로 찍힌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연행돼 철저한 '신상털이'를 당한다. 용의자가 된 사람은 모두 출생시점부터 시작하는 장문의 '이력서'를 쓰도록 강요당했다. 일제 시절 독립운동가나 사회운동가들을 탄압했던 악명 높은 특별고등경찰(특고)이 애용했던 취조수법이다. 공포 분위기 속에서 몇 차례 반복되는 이력서 쓰기를 통해 용의자 가족들의 신상, 교우관계, 학내 활동, 관여한 사회단체들이 드러난다. 그 안에는 공안기관의 시각으로 보면 반드시 '꼬투리'가 들어있기 마련이다.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채 수십 일간 계속되는 '강압수사'(가혹행위 고문) 과정에서 '꼬투리'는 점점 부풀려져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공소장으로 나타난다. 재일동포 관련사건에서 무리한 수사가 많았다는 것은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사람들의 회고록이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조일제 전 오사카 총영사, 최세현 전 도쿄주재 정보공사 등)

하지만 간첩혐의로 기소된 유학생들이 실제로 했다는 행위는 별 것이 없다. "민족일보 사건으로 처형된 조용수의 추도식 참가를 계기로 민단의 비주류계 신문에서 활동"(김원중), "1975년 출감 직후 인민혁명당 사건이 조작이라는 기고를 신문에 실었다는 이유로 재구속된 시인 김지하의 육중투쟁기 국내 반입"(김정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서클에 옵저버로 참여"(강종현) "술자리에서 경찰의 강압적 학내시위 진압 비판"(이종수) 정도다. 겸찰이 법정에서 간첩행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박정희와 전두환의 폭압통치 아래서 이들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정당한 방어권 보장을 일체 받지 못했다. 심지어 공판개정일 아침에

서야 공소장을 전달받은 사람도 있다.(김원중) 형이 확정된 뒤에도 이들은 국내 학생과 여러 가지로 다른 차별을 받았다. 유신시절 민주화운동을 벌인 국내학생들은 대부분 긴급조치위반 혐의로 구속돼 육중에서 '정치범' 대우를 받았지만, 유학생들은 그저 '좌익수'에 불과했다. 7·4 공동성명으로 잠시 활로가 열리는 듯했던 남북대화가 1973년 가을 파탄에 이르자 좌익수 특별수용사동(특사)에는 '전향공작'이란 이름 아래 모진 고문이 자행됐다. 서승·서준식 형제는 가장 엄혹했던 시기의 전향공작을 견뎌내야 했던 피해자들이다. 1975년 베트남전쟁이 '월남'의 패망으로 일단락되면서 불어 닥친 '남침 공포' 분위기 속에서 통과된 사회안전법으로 '좌익수'는 육중에서 전향선언을 하지 않고는 형기 만료가 되더라도 석방되지 않았다. 유학생 정치범 가운데 형 만기후 보인감호소로 보내져 확정형기보다 더 오랜 수감생활을 보내야 했던 사람은 서준식, 강종건 2명이다. 이들은 묘하게도 김성근 감독이 나온 교토 가쓰라고교 출신이다.

3 일본에 돌아간 이후의 삶

동포유학생들은 길게는 19년, 짧게는 3년 안팎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희망을 찾으려 했다가 절망만 간직한 채 모국을 뒤로 해야 했다. 돌아가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여권이 발급되지 않아 임시여행증명서로 대신해야 했고 일본 체류자격도 계속 문제가 됐다. 동포 2세여서 '협정영주'(나중에 특별영주로 바뀜) 자격의 소유자였지만, 수감생활로 자격을 박탈당했다. 초기에는 3개월 단위로 체류자격을 갱신해야 했고, 지금은 일 반영주자 취급을 받고 있다. 유학생 정치범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특별영주 자격 회복을 일본 정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그저 방관하고 있다.

모국을 찾았다가 지옥의 밀바닥을 보았던 이들은 피해의식에 젖어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호간의 교류 없이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래서 지금도 소재파악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내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일부는 인터뷰 내내 눈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많은 이들이 고문후유증을 앓고 있고 '간첩' 낙인을 찍힌 탓에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이들도 제법 있다.

세속적 의미에서 출세한 사람은 거의 없다.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는 교수직에 오른 사람은 '특별임용'된 서승, 학위 과정을밟은 김원중씨 정도다. 대부분 음식점 운영, 노동자, 한국 어강사 등의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1970년대, 80년대 대학생으로 수감됐던 동

세대의 모국인들 가운데 일부가 국회의원 정치가 교수 벤처기업인 언론인 등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 사회에서 인지도가 높은 강상중 교수의 삶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와세다대 대학원을 나와 독일에 유학했던 그는 일본에 돌아와 대학에 자리 잡은 뒤 티브이 방송에 자주 출연해 재치 있는 논평으로 주목을 받았고 재일동포로서는 처음으로 도쿄대학 교수가 됐다. 그는 대학 재학시절 모국을 일시 방문했다가 자신의 뿌리를 확인한 영향인지 일본 이름을 버리고 '본명'을 쓰기로 결심했고 동포학생들의 운동에도 열심히 참여했다. 1974년 7월 민청학련 사건에서 사형 무기 등의 중형이 선고됐을 때 그는 동료학생들과 함께 주일 한국대사관 앞으로 몰려가 시위대열의 선두에 섰다. 당시 올부짖는 듯한 그의 얼굴 모습이 담긴 사진이 마이니치신문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 그가 만일 유학 행선지로 한국을 택했다면 오늘의 강상중이 있었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도 어느 날 정보기관의 지하실로 끌려가 '간첩'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독재정권은 전 도유망했던 동포사회에 젊은 인재들이 날아보기도 전에 날갯죽지를 마구 잘라버린 셈이다.

4 재심 무죄 판결 이후의 과제

2010년부터 재일동포 유학생 사건에서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일고 있다. 이종수 사건을 시발점으로 해서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유학생 신분이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관련 일반인 사건에서도 무죄선고가 나오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재심변호인단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이지만, 넓게 보면 오랜 민주화투쟁을 배경으로 해서 축적되어온 과거사 규명작업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유학생 사건에서 무죄선고를 생취한 것으로 그 시대의 아픔이 일단락될 수는 없다. 무죄선고와 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좌절된 꿈, 잃어버린 청춘과 망가진 건강이 원상회복될 리는 없다. 우리들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이들이 입은 정신적 물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도덕적 책무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진 이들을 돋기 위해 일본에서 헌신적으로 움직였던 일본인 활동가들의 노고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권위주의 시대에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던 민주화 활동가들은 재일동포 정치범들에 대해 유·무형의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 당시 그들의 곤경을 보고서도 적극적으로 진상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도움의 손길도 거의 내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 내 재일동포 정치범 구원운동의 산증인인 요시마쓰 시게루 목사

가 1970년대 국내에 들어와 한 저명한 인권변호사를 찾아갔다가 들었다는 얘기는 아주 시사적이다. 그 변호사는 “일본인이 왜 이런 사건에 관여하느냐? 왜 찾아왔느냐”며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다고 한다. 일본인들의 끈질긴 구원활동은 철저하게 고립됐던 재일동포 정치범들에게 유일한 정신적 버팀대 구실을 해주었다. 그들의 활동을 복원해 한국 사회에 알리는 것은 건강한 한·일 시민운동의 교류의 폭을 넓히는 길이기도 하다. 구원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일본인 중에는 이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재일동포에 대한 인종차별적 시위 반대, 외국인 이주노동자와의 공생운동, 평화헌법 수호운동을 벌이며 일본의 양식을 지키는 이들이 적지 않다.

나아가 체계적인 진상규명작업이 지속되어야 한다. 유학생 간첩사건 조작을 기획한 사람, 고문 등 가혹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 고문에 의한 조작의 개연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중형을 구형하고 선고한 검찰과 사법부의 구성원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기록을 남김으로써 경종을 울려야 한다. 한·일 공안기관 사이의 연계 협력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이다.

피해자들과의 대화 – 초대 손님 소개

▪ 강종현 | 康宗憲

1951년 나라(奈良)현 출생. 1975년 12월 2일 서울대학교 의학부 재학 중 보안사에 불법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1977년 대법원에서 사형판결 확정. 1982년 무기징역으로 감형. 1988년 가석방. 1989년 일본에 돌아와 같은 해 한국문제연구소 설립. 그 뒤 오사카(大阪)대학 대학원에서 국제정치를 공부함. 현재,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学) 아시아연구기구 객원교수.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 오사카쇼인여자대학(大阪樟蔭女子大学), 도시사(同志社)대학 등에서 일본국헌법 9조를 중심으로 평화학을 가르치고 있다. 2015년 8월 13일 대법원에서 재심 무죄확정.

▪ 김원중 | 金元重

1951년 도쿄(東京) 아다치(足立) 출생. 1970년 호세이(法政)대학 경제학부 입학. 민족통일신문, 민주주의민족통일위원회(민민통) 활동. 1974년 한국으로 유학. 1975년 서울대학교 사회대학원 경제학과 입학. 1975년 10월 17일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불법연행. 1976년 징역 7년 확정. 1982년 형기만료 출소. 현재 치바(千葉)상과대학에서 한국의 산업발전과 노사관계의 변천을 주요 주제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2012년 3월 29일 재심 무죄확정.

▪ 김정사 | 金整司

1955년 사이타마(埼玉)현 치치부(秩父) 출생. 1977년 서울대학교 사회계열 입학. 1977년 4월 21일 전방전학을 하면서 탐지한 국가기밀을 한민통 소속 공작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보안사에 불법연행. 1978년 징역 10년 확정 선고. 1979년 8월 15일 가석방. 2010년 8월 발족한 비영리법인 ‘재일한국인 양심수의 재심무죄와 원상회복을 쟁취하는 모임’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13년 5월 9일 대법원에서 재심 무죄확정.

'재일동포 정치범', '한국' 사회에 무엇을 제기하는가?

권현태 성공회대 일본학과

발표자는 지난 2006년 아래, '재일동포 정치범'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2008년경에는 '재일동포 정치범' 경험을 지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특히 당시에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김원중 선생님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또 책에서 길게 언급되고 있는 이종수 선생님과 이름만 언급되어 있는 정승연 선생님으로부터는 수 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들었으며 오늘 이 자리에 와계신 강종현 선생님과 이철 선생님과는 짧은 만남을 가진 적도 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이후 '진실화해 위원회'의 조사 작업에 협조하기도 했고, 혹은 작은 비공개 연구회에서 이 주제로 발표할 기회를 가지기도 했지만, 그 후 제 개인 사정과 주제가 주는 '중압감' 때문에 연구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려 김원중 선생님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더불어 오늘 이 귀중한 기록물을 내주신 김효순 기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효순 기자님 책에서 언급된 사실을 실마리로 해서 한국 사회와 관련해 '재일동포 정치범' 사건이 갖는 함의에 대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몇 가지 말씀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 책에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어떤 실마리를 이끌어낸다고 한다면, 이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재일동포와 한국 사회의 연결고리에 대해서이다. 재일동포 정치범 사건은 필자의 말대로 "재일동포의 특수한 처지와 성장 환경, 한반도의 분단상황, 남과 북의 재일동포 정책, 모국정권과의 관계정립을 둘러싼 민단 내부의 오랜 갈등, 한일 공안 기관의 연계, 한국 정보

기관의 협력망과 수집된 정보의 신뢰도, 김대중의 해외기반을 제거하려는 당국의 집착, 모국의 민주화 운동에 소극적으로나마 동참하고 싶었던 동포청년의 의식, 구속된 유학생 가족들의 고통, 정치범 구원활동을 통한 한일 시민의 만남, 전향공작 제도와 폐지 운동 등 다양한 접근"(19-20쪽)이 필요하고 이 책은 이런 접근 방식에 매우 충실히다. 구체적인 사실을 면밀한 구성을 통해 재구성하고 거의 '무지'에 가까운 한국의 독자들에게 재일동포 정치범 사건의 진실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일동포의 특수한 처지와 성장 환경"과 "모국의 민주화 운동에 소극적으로나마 동참하고 싶었던 동포청년의 의식"이라는 요소에서 재일 청년들의 '주체적 개입'이라는 요소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며 이를 한국의 현대사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혹은 자리매김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이다.

필자가 "희망을 찾으려 왔다가 가혹하게 벼랑받은 재일동포 희생자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민 적이 없다"(23쪽)며 한국사회의 냉담함을 지적하면서 어떤 실마리를 이끌어낸다면, 여기서 말하는 "따뜻한 손길"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거칠게 정리하면, '억울함'을 푸는 일, 즉 진실을 밝혀내고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일(진상규명과 무죄 판결 획득)에서부터 책임자(가해자) 처벌 및 배상/보상을 이루어내는 일까지 매우 다양하다. 현재 진상규명과 무죄판결이라는 점에서 일정 성과를 거두고는 있다.

2015년 9월 현재 재심청구 등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재일동포 정치범은 모두 23명이고 6명의 재심 청구 사안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진실과 화해 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온 경우는 9명에 불과한데다 위원회의 기능이 정지된 현재 추가의 진상규명은 요원하다. 또 전체 재일동포 정치범의 규모(역 100-150명로 추정)에서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재일동포 정치범 사건을 좁게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사에, 넓게는 한국(한반도) 현대사, 더 넓게는 사회운동사의 세계적 양태 속에 어떻게 사상적으로 자리매김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전제로 재일동포 정치범 사건이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재일동포 정치범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자료적인 제약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재일동포 정치범'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2007년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제3권 8개 사건조사결과 보고서(하)>에 따르면(169쪽), 1951년부터 1989년까지의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간첩사건'(이하 '일본관련'으로 줄임)은 423건으로 총 간첩건수 4,326건의 9.8%를 차지한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1951-1969년은 총 건수 3,360건 중, 104건

(3.1%), 1970~1979년 총건수 681건 중, 204건(30.0%), 1980~1989년 총건수 285건 중, 115건(40.4%)으로 간첩사건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서도 '일본관련' 사건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효순이 지적한대로 1970년대에 "북에서 직파되는 간첩수가 눈에 띠게 줄어들자 일본을 경유한 '우회 침투' 가능성에" 주목한 수사당국의 '작전'의 결과이고 따라서 이들은 "어항 속에 갇혀 언제 낚일지 모르는 물고기 신세"였음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국방부가 밝힌 '일본관련'이란 "1. 대한민국으로 건너와 재학 또는 재직 중, 간첩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2. 국내인으로 취업자 또는 친족을 만나기 위해 일본으로 건가가 재일동포와 접촉한 후 귀국하여 간첩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는 뜻인데, 만일 전자라 한다면, 재일동포 간첩 사건의 건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김효순은 '일본 관련' 정치범을 150명, 이 중 재일동포를 80여 명으로 추정(18쪽)하고 있는데, 재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재일동포 정치범은 109명이고(在日韓國民主人權協議會,『家族·僑胞の会、13年をふりかえって』, 1990), 필자가 임의로 분류한 결과에 따르면 1971~1990년까지의 재일동포 정치범은 약 120명이다.(권혁태, '재일조선인과 한국사회', <역사비평>, 2007년 봄). 자료적인 제약 속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리한 결과이니 어떤 수치가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남한의 공안 사건 중에서 재일동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사실 만큼은 분명하다. 필자는 과거에 한국의 상업영화에서 재일조선인이 어떻게 표상되는가를 분석한 바 있다.

해방 후 일본을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반공영화는 일본을 소재로 한 영화 총 356편 중, 35편으로 약 10%라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재일조선인을 소재로 한 반공 영화는 1963년을 처음으로 1969년까지 5편, 1970~75년 12편, 1975~79년 5편, 1980~86년 4편으로 총 26편에 달한다. 이는 반공을 소재로 한 영화 총 35편의 74%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다.¹ 다시 말하면 일본과 반공을 이어지는 매개체로서 재일조선인을 등장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1950년대까지는 재일조선인을 매개로 한 반공 영화가 눈에 뜨지 않는다는 점이다(위의 논문 참조). 재일동포 정치범이 늘어나는 추세와 영화에서 반공의 소재로 재일조선인을 등장시키는 경향이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일단 필자가 각종 자료를 동원해 신상이 어느 정도 파악된

¹ 조사는 한국영상자료원(Korea Film Archive)데이터 베이스 상의 '국내영화제작 정보' 항목에서 '일본'으로 키워드 검색한 후, 줄거리에 반공을 소재로 한 재일조선인이 등장한 경우에 한정하였다. 검색시점은 2004년 8월이다.

재일동포 정치범 70명을 연령 및 한국방문 목적별로 나누어 살펴보자. 이들을 '식민지 출생 세대'와 '해방 후 출생 세대'로 나누면, 전체 70명 중에 전자가 26명이고 후자는 39명이며, 이중 유학 목적이 33명(사업 및 방문 목적도 사실은 유학경험자를 포함)이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1945년 이전 출생이 26명(모두 사업 및 방문 목적)이고, 1945~1959년생이 39건(이 중 유학목적이 33명), 불명 5명이다.

모국유학을 목적으로 한 해방 후 세대(재일 2,3세)가 중심인 셈이다. 당연하게도 유학이 가능한 '한국국적자'가 중심이고 조선학교 경험자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시절에 '조문연', '유학동', '한문연' 등과 같은 '민족 동아리' 경험을 지녔고 동시에 성장기에 '본명선언' 등을 결단한 사람들이 중심이다. 즉 민족적 자각을 위한 재일사회의 노력이 남한에게는 '위협'이었던 셈이다. 이 같은 사실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표1>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간첩' 통계

연도	전체건수	이중 일본관련	연도	전체건수	이중 일본관련
1951~1969	3,360	104(3.1%)	1980	58	6
1970	150	24	1981	35	15
1971	127	31	1982		
1972	60	20	1983	63	19
1973	64	37	1984	33	23
1974	86	25	1985	54	22
1975	63	26	1986	26	20
1976	39	10	1987	9	6
1977	24	14	1988	7	4
1978	23	6	1989		
1979	45	11	1980~1989	285	115(40.4%)
1970~1979	681	204(30.0%)	합계	4,326	423(9.8%)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제3권 8개 사건조사결과 보고서(하)>, 2007, 169쪽.

하나는 재일동포 사회의 연령구조의 변화(2,3세의 대두)와 고학력화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한국국적자'에게는 민족교육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이들의 '모국배우기'가 거의 개인적인 결단(=유학)이나 동아리 활동 등에 맡겨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모국배우기'가 성장기에 경험한 민족적 / 사상적 갈등과 자각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한다

면, '재일동포 정치범'사건은 '기민정책'과 '간첩만들기'라는 남한 정부의 이중의 폭력의 결과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들의 '모국 배우기'가 1970년대의 '성묘단' 사업과 함께 '북송(귀국)사업'에 대항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고안된 결과라고 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두 번째는 이 같은 민족적 자각을 위한 노력이 간첩 혐의의 소재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보안사>을 펴낸 김병진은 "재일동포가 「간첩」으로 만들어질 때, 무엇보다도 먼저 민족적 자각을 언제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라는 점부터 조사가 시작된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재일동포에게는 이미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 위한 「동기」가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金丙鎮, 『保安司』晚聲社, 1988년, 156쪽). 또 김효순의 책에서도 "정체성 갈등과 민족적 자아를 되찾으려는 노력은 대공용의점"(302쪽), "우리말 실력이 의심의 단서"(302쪽)이라는 지적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까? 물론 "유학생들은 대부분 국내물정을 그 정도로 몰랐다"(319쪽)는 기술이나 강상증을 말하면서 이를 "극렬한 '반한분자'였을까?"(22쪽)라는 반문을 던져 이들을 사상의 자유가 주어져 있고 조총련과의 접촉이 일상적일 수밖에 없는 일본에서 성장해 한국 사회의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청년"들이었다는 평가는 그 자체로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반공정권의 '폭력성'을 모르던 이들의 '순진함'을 강조해 이들의 선택을 '몰주체적'으로 자리매김하는 순간, 이들이 모국유학을 결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때까지, 또 위험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한국거주를 지속했던 이들의 민족적 자각=주체성의 회복이라는 요소가 가려질 위험이 있다. 즉 이들의 결단을 역사에 개입하고자 하는 개인 혹은 재일동포 사회의 주체적 노력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없을까? 혹은 고국의 민주화와 통일에 개입하려는 / 개입한 하나의 주체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일까? 책의 곳곳에서 이들이 한국유학 동기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를 알 수 있다.

김원중은 "모국에 있는 동세대의 젊은이가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던 현실에서 내가 허송세월을 보냈다거나 괜히 모국에 가서 인생을 망쳤다거나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78쪽)고 말한다. 또 김정사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뭔가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184쪽), 그리고 "그저 자신의 잃어버린 민족성을 되찾는다는 생각으로 조국에 앉는데 간첩이라고 하니 기가 막혔다"(190쪽),고 말한다. 유영수는 군사적 긴장 완화해소 방안을 남북의 군당국자들이 만나 논의해야 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의견을 군간부에 전달했고 이 때문에 고초를 겪었는데, "당시로서는 그 길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다.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선택"(186쪽)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강종현은 일본의 학생운동을 보고 "일본인이 아닌 자신이 대학생활을 그렇게 보내야 하는지 회의"(300쪽)을 가지고 있었

는데, 전태일 분신기사를 접하고 "자신과 비슷한 세대의 젊은이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으면 생을 마감할까"(301쪽)라는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재일한국인 청년으로서 모국의 젊은이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소박한 심정에서 유학"(293쪽)을 결심했으며 매혈 모습을 보고 가난한 사람에게 봉사를 위해 의예과 진학해 "시대의 아픔을 같은 또래의 국내 젊은이와 나누고 싶은 생각"(301쪽)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사형 집행을 대비해 흰색 한복과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이 한 몸을 바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297쪽)했다는 고백에서도 한반도의 역사에 개입하려는 재일 청년의 주체적 결단의 의지를 읽어낼 수 있다. 게다가 유영수가 '조국이 어디인가?'라는 검사 질문에 "저의 조국은 한반도이며, 38 이남에는 대한민국이 있고 38이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다고 알고 있다"(186쪽)고 말하거나 서준식이 "공산주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279쪽)라고 답하고, 그리고 김원중이 존경하는 인물이 마르크스 레닌이며 자신은 사회주의자라고 법정에서 천명하고 있는 사실 등을 들어 한국의 물정을 모르는 '순진한' 재일청년이라는 평가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 같은 고백이 던진 한국사회에 던진 '울림' 혹은 이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무시도 재일정치범 문제를 생각할 때 동시에 시야에 넣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일동포 일반의 문제와 한국 사회와의 관련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재일조선인에 대한 호칭은 1950년대 중반이후 민족적 입장으로 강조하는 '재일동포'에서, 북송 사업에 대한 대항적 입장이라는 냉전적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재일교포'로 변화하게 되었고,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종종 동포에 대한 동화 / 회유라는 차원에서 '재일동포'라는 용어로 변화했다. 최근에는 주로 진보적 매체가 '재일동포'를, 보수적 매체가 '재일교포'라는 호칭을 다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학계를 중심으로 재일조선인이라는 호칭을 다용한다. 해방 후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진 재일조선인에 대한 이미지는 반공군사독재정권 하에서 배양된 대체로 한국말을 잘 못하는 '반쪽발이', 조총련 등에서 연상되는 '빨갱이', 그리고 경제대국 일본자본주의를 배경으로 한 '부자'로 대표된다. 이는 한국 사회가 재일조선인을 바라보는데 있어, 각각 '민족', '반공', '개발주의'라는 세 가지 필터(회로판)가 작동된 결과이다. 이 같은 이미지가 재일동포 정치범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재일동포 정치범이 이 같은 이미지를 증폭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미지는 민주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인적 교류, 정보 교류가 활발해지고, 기존에 재일조선인과 한국 사회의 '교류'를 가로 막고 있었던 각종의 벽이 낮아지고, 정부 및 일부 지식인의 정보 독점 체제가 붕괴되면서, 재일조선인에 대한 다양한 시점과 정

보가 제공됨에 따라 적지 않은 변화를 보이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재일조선인 담론은 여전히 세 가지 필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다소의 변화가 보이지만 이 변화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지닌다.

하나는 디아스포라론이 유행했던 시기에 나타난 것처럼, 재일조선인을 탈민족 / 탈국가의 표상으로 받아들여 민족 / 국가 / 역사에 굴절에 방치되어 있는 재일조선인의 현실로부터 눈을 돌리는 경향이 드러난다. 또 하나는 해외동포에 대한 시선이 성공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 개발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탓에 경제적으로 성공한 기업가나 혹은 유명인들의 이미지로만 소비되고 있는 현실이 있다. 또 전문 연구 영역에서도 일부 공안 기관의 북한의 우회 침투 경로서의 재일조선인 연구라는 냉전적 시각을 논외로 한다면, 대체로 재일조선인 문제를 '일본 문제'의 하나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재일조선인 문제의 '외부화'인 셈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역사 속에 재일조선인, 혹은 재일동포 정치범 사건을 어떻게 녹여 낼 것인가의 문제는 이런 '외부화'된 재일조선인을 일단 '내부화'시키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한반도를 벗어나 외국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는 현재 약 700만에 달한다. 한반도 전체 인구의 약 10%이다. 해외 거주 인구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 중의 하나가 한반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거주 인구비율이 높은 곳으로 알려진 중국은 2.5%이고, 인도도 1.5%에 지나지 않는다. 해외거주 인구가 75%에 달하는 유대인의 경우, 약 2천 년에 걸친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디아스포라가 양산되었지만, 한반도의 경우, 겨우 100년 정도, 그것도 거의 20세기 초반 전반부에 집중되어 있다. 한반도의 근현대는 '이산'의 역사 그 자체이다. '이산'은 19세기부터 20세기의 '야만의 시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식민지 지배를 거치면서 한반도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러시아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따라서 식민지 지배가 끝나면, 당연히 '이산'의 역사는 '마감'되어야 했다.

귀환하거나, 귀환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왕래는 있었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냉전주의는 '이산'의 역사에 또 다른 '이산'의 역사를 던져주었다. 해외동포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정치적 방향과 한반도의 분단정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규정 당했다. 북한과 남한 사이에 단절이 있었던 것처럼, 해외 동포와 해외 동포 사이에, 해외 동포 내부에, 그리고 해외 동포와 한반도 사이에 단절이 있었다. 결국 식민지 지배에서 시작된 이산의 역사는, 냉전주의와 분단이라는 또 하나의 '식민주의'에 의해, 이중, 삼중의 분단을 가져다주었다. 한반도의 '이산'의 역사 중에서 재일조선인의 역사는 다른 지역과 같으면서도 다르다. 식민주의의 당사자인 '심리적 적국'인 일본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일 관계

와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조건에 의해 개인의 삶이 끊임없이 휘둘려왔다. 모국유학생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옥고를 치른 약 100여명에 달하는 재일조선인 정치범이나, 일본에서의 차별에 시달려 '고향 아닌 고향'인 북한 '귀국'을 택한 약 10만 명에 가까운 '귀국자'의 고난 등은 이 이산의 역사에 또 하나의 고통이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여전히 인색하고 답답하다.

한국의 근현대사 연구에서 재일조선인사는 '공백'이다. 독립운동사에서도 재일조선인 운동사는 남에서도 북에서도 '공백'이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사에서도 '재일한국인 유학생 정치범' 문제는 정당하게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권혁태, '포스트콜로니얼 시대의 재일조선인, 어떻게 만날 것인가', <황해문화>, 2007 겨울호). 오늘 이 자리가 그리고 김효순 기자의 책이 이 같은 '공백'을 다소나마 메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공백'을 메운다는 것은 잊혀진 기억을 되살려 제 자리를 찾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뼈아픈 성찰의 과정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과거의 기억을 제 자리로 되돌리는 것은 과거로부터 뻗어 나오는 현재의 삶을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노력 중의 하나가 한국의 과거사 청산 노력이다. 민주화 이후에 본격화된 한국의 과거사 청산이 불충분하게나마 재일동포 정치범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법적인 무죄 선고를 이끌어내 정치범들의 '억울함'을 늦게나마 풀어내는데 일정 역할을 한 것만큼은 분명하다. 하지만 김정사가 자신에게 무기를 선고한 당시 판사 "김황식이란 이름을 더욱 잊을 수 없다"(191쪽)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보상 / 배상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할 만큼 불충분하다.

또 하나의 문제로 과거사 청산이 일종의 '대한민국 다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성격이 매우 강하고 이를 독일이나 프랑스 사례와 비교해서 말하자면 '이행기의 정의'에 나타나는 일종의 '자부의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민주화 이후의 대한민국'이라는 시공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성공'(정치적 민주화와 경제 성장의 동시 달성)이라는 결과에 맞추어, '순수한' 민주화운동을 선별하는 형태로 '과거'를 가공 / 해석해 대한민국이라는 시공간의 '오점'을 제거하기 위한 '자부의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權赫泰, 「歴史と責任」は何を問いかけようとしているのか,『インパクション』, 171, 2009). 이 과정에 재일동포 정치범에 대한 '복권'이 '이용'되고 있다면 이는 재일동포 정치범들의 주체적 결단을 '물주체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이나 베트남 통일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분단과 식민주의를 넘어서려는 움직임의 역사에 해외동포의 노력을 보완적으로 덧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 운동의 질과 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의 문제를 포함해 독립운동사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역사의 총체에 이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가 중요하다.

재일동포 간첩 조작사건, 그 인구전환복을 위한 예상

조영선 재일동포정치범 사건 재심 변호단

1. 들어서며 – 재일동포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움직임

재일동포 간첩사건은 1970년대 이래로 신문을 오르내리던 ‘반공 안보’ 주제였을 뿐 ‘조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 운 적은 없었고 사건의 진실이나 피해자 개인이 겪은 고통은 그나마 서승, 서준식 형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인의 역사 속에 묻혔다. 비로소 진실과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이하 진화위라 한다)가 2008.9.23. 이종수 간첩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¹을 한 이후 형사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선고²됨으로써 일부나마 재일동포 간첩사건 피

해자들 또한 보안사 또는 중앙정보부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었음이 폭로되었다.³

그럼에도 아직까지 대다수 재일동포 간첩 조작사건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 것은 피해자 개인의 결단·신념의 문제일수도 있지만 아직도 사랑했던 ‘조국에 대한 배신감’과 한국의 사법제도, 정치권력에 대한 의심을 벼릴 수 없기 때문이다. 진화위 또한 소수 몇 사람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그 ‘조작’의 역사를 밝혀냈을 뿐 2010.12월 그 활동을 정지하였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한 반성과 사죄, 그리고 일괄 배상내지 보상을 통해 정의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진화위 관련 법안은 논의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 개인의 결단에 의지한 형사재심과 국가배상 절차를 통해 그나마 진상규명 및 국가 배상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그 저루한 재판절차로 인해 또다시 고통 받고 있다.

2014년 국정원이 유우성 간첩조작을 위해 영사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져 국정원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았고 합동신문센터의 위법성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는 간첩조작 사건이 시대를 넘어 계속되어 왔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국가가 버린 사람들’ 재일동포의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2. 재일동포 간첩 조작사건의 현황

가. 재일동포 간첩 조작사건

이른바 재일동포 관련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사건, 간첩 사건⁴은 각자의 입장, 대상에 따라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 재일동포모국 유학생간첩사건,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 또

1) 진화위는 2008.9.23. ‘국군보안사령부는 신청인 이종수를 1982.11.6. 연행하여 1982.12.14.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39일간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기하고, 신청인 이종수에게 검찰에 가서 부인하면 다시 고문하겠다고 위협하여 허위자백을 받아 간첩죄로 조작하였다’면서 진상규명 결정을 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 2010.7.15선고 2009재노42 판결

아울러 위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재판장 이강원, 백승엽, 반정모)는 이종수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재일동포 유학생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가 안기부 명의로 피고인을 불법 연행하여 39일간 강제구금한 상태에서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약 5년 8개월간 아까운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낸사건이다. 재외 국민을 보호하고 내국인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될 책무를 지고 있는 국가가 반정부 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정권안보차원에서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 한 국어를 잘 못하여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을 악용하여 재일동포라는 특수성을 무시하고, 오히려 공작수사의 대상으로 이용한 것이 이사건의 본질이다. 이에 우리 사법부는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심대한 피해를 입은 피고인에게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하여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3)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의 범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최초’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종수보다 먼저 김우철, 김이철 형제는 2010.1.28. 무죄 확정(광주고등 2009재노14)된다 있다. 별지2 참조

4) 국방부 과거사 위원회는 위원회가 규정하는 재일동포 및 일본관련 간첩사건의 범위 및 정의를 1) 대한민국으로 건너와 재학 또는 재직 중 간첩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2) 내국인으로 취업자 또는 친족을 만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재일동포들과 접촉한 후 귀국하여 간첩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로 나누고 있다.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2007.12. 종합보고서

는 재일한국인정치범⁵으로 불리운다. 실제 간첩조작사건은 연령, 직업, 남녀, 민단 성원여부 등을 불문하고 정권의 필요에 따라 광범위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어디까지 조작이고 아니냐 하는 문제는 개별사건별로 그 편차가 존재하고 그 입장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소한 국가기관에 의한 위법한 강제수사를 통하여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이 침해된 상태에서 사건이 창작, 왜곡, 과장되었다는 점⁶에서 '조작'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본다. 다만 시론적으로 공통적으로 불리울 수 있는 최소한의 징표를 ① 재일동포, ② 간첩,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사건, ③ 조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나. 재일동포 간첩 조작사건의 현황⁷

재일동포 간첩 조작사건의 범주를 어떻게 보느냐⁸,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조작되었느냐 등에 따라 그 현황은 다를 것이고, 아직까지 재일동포 조작사건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한편,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7. 12. 종합보고서에서 기무사의 「일본관련간첩 검거현황」과 중앙정보부의 「간첩검거명단」 등을 취합한 결과 일본관련 간첩사건은 319건(기무사73건)인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밝힌바 있다.⁹

또한 대법원은 2007. 2. 언론보도를 통해, '사법부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1972~87년 이뤄진 시국·공안 사건 판결 가운데 불법 구금과 고문 등 재심 자유가 있는 사건 224건을 선정'

5 재일한국인정치범 구원 가족교포회

6 방북하지 않았음에도 방북한 것으로 착작되고, 학비 내지 교통비에 보태 쓰라고 주었을 뿐인데 공작금으로 왜곡되고, 1회 만났음에도 4~5회 만난 것으로 과장되었다.

7 재일동포 간첩사건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로는 중앙정보부가 1975년 말경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검거간첩 종합 명단」, 1977~1978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재일동포 및 일본인 정보사범 현황」자료, 보안사가 작성한 「대공 30년사」, 「대공 활동사 1」 등이 있다.

8 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7. 10. 보고서에서 일본관련 간첩사건에 대해 ①재일동포모국유학생간첩사건 ②재일동포의 한국취업방문간첩사건 ③한국인일본유학생간첩사건 ④한국인의 일본취업방문밀항 관련 간첩사건 등으로 분류하고 1977.~2000.까지 발생한 98건의 사건목록을 공개한바 있다.

9 국군보안사령부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데도 수많은 '재일교포유학생간첩사건'을 수사했다. 그런 보안사는 「대공삼십년사」에서 "71년부터 74년 말까지 공작과 부활과對日工作係의 신설에 따라 '공작근원 발굴작업'에 착수하여 총 384명의 대상을 선정하여 집요한 공작활동을 전개한 결과 김영작, 진우현, 최철교, 김철우 등 30여명의 간첩을 일망타진했으며, 75년부터는 교포유학생을 대상으로 737명을 선발하여 공작활동을 전개하여 강종현 일당 20여명의 간첩을 색출하였다"라고 했다. 보안사의 '공작근원 발굴작업'은 1980년대에 들어서도 '재일교포 모국유학생 위장간첩 근원발굴계획'을 통해 계속되었다. 모국 유학 교포학생들을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낙점해 필요할 때마다 간첩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2012.10.20. 민교협 등 토론회 '유신체제와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진실과 의미', 안병욱, [한국의 과거사 정리와 재일동포 조작간첩 문제] 2쪽 이하 참조

하였고 이 가운데 '간첩 사건은 유형별로 △조총련 관련 52건 △남파간첩 33건 △남북어부 18건 △재일교포 16건 △기타 22건 등'으로 집계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리고 진화위는 일옹 1970~80년대에 걸쳐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명활동을 전개하였던 '재일한국인정치범 구원 가족 교포회'가 추산하여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재일동포 간첩사건은 아래와 같이 160여명이고, 이중 국내출신을 제외한 재일동포관련 사건은 130여건으로 파악한바 있다.¹⁰

서승(26), 서준식(22), 정시일(32), 구광신, 임청조(24), 조병모, 유정이, 구말모(36), 양한길, 구말막, 김양진(39), 강철순(38), 고종호(35), 사와키 미즈키(澤木三次, 59), 한삼자, 최창일(33), 전경배(41), 김철우(49), 박선정(41), 김길우(46), 정승연(44), 정연수(43), 양용진(56), 양희선(36), 최상룡(32), 김주태(35), 유정식, 김영권, 서화수, 이성희, 최규식, 유창열, 이한식, 전영관, 고병택(37), 김영작(33), 최철교(42), 하정대, 김승효(24), 안인식(28), 신동인(51), 진두현(46), 김달남(31), 유연식(35), 김원남, 이토 겐타로(伊藤玄太郎, 64), 백옥광(27), 김철현(29), 김오자(25), 김종태(26), 김원중(25), 김동휘(22), 최연숙(25), 이원이(24), 강종건(25), 허경조(33),¹¹ 장명옥(25), 장영식(27), 이철(27), 강종현(24), 이수희(23), 조득훈(22), 이동우(22), 박양채(61), 양남국(24), 황용순(57), 테라키 도쿠모리(寺木德守), 강우규(60), 유영수(28), 유성삼(25), 김정사(21), 손정자(18), 조상록(32), 지정관, 권한상, 신귀영, 김우장, 여석조(61), 박찬혁, 박찬석, 손유형(51), 김평강(41), 허동희(42), 이주광(28), 이현치(29), 김태홍(23), 박천숙, 진리촉(23), 김찬길, 김춘보, 차풍길(38), 박영식(29), 이순희(32), 이승우(30), 이양자, 김양수(46), 김희봉, 이종수(25), 양달진, 최양준, 김연희, 양종이, 황차란, 김장호(42), 김동주, 김손규, 국인식, 김현주, 정인식(65), 박부(27), 서성수(31), 고찬표, 유제손, 김상원, 김주(62), 이성우(58), 천금란, 김해순, 소경운, 소병운, 박수관, 허철중(31), 윤정현(31), 조일지(28), 조신치(28), 채도손, 강희철, 신광수(55), 김계수, 유지길, 김윤수, 방원정, 김길옥(56), 찬연석, 구명수, 김철준, 최원삼, 안인철, 김병연(59), 윤재성

10 진화위, 신청인 이철에 대한 재일동포유학생 간첩조작 의혹사건 사전조사결과 보고서, 별지1 참조

11 진화위는 허경조에 대해서, 1973. 3. 서울대 의과대학에 입학, 본과 1년을 다니다 휴학 중, 1975. 10. 13.경 중앙정보부(이하 '종정') 수사관에 의해 연행되어 간첩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985, 재판장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검사 서익원, 서울고등법원 76노1184, 재판장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검사 서동권, 박일홍, 대법원 76도3117, 강안희, 재판장 대법관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77노35, 재판장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검사 김성진)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위원회 조사결과 종정이 허경조를 연행하여 장기간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고문, 가축행위를 가하여 허위자백을 강요한 사실이 밝혀져 진실규명으로 결정하였다.

(51), 신양봉(58), 유종안, 유한기, 최해보, 최손웅, 김양기, 강관보, 양승선(54), 심한상(66), 김순일(28), 이동기(37), 이병호(52), 고찬호, 구명우(28), 장의균(36), 서순택(61), 서순단(67), 김홍기, 김우철, 조명래¹²

따라서 대략적으로 재일동포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략 130여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 형사 재심 무죄판결 현황

일옹 재일동포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중에서 형사재심을 통하여 무죄 등을 선고받거나 진행 중인 피해자들 중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아래와 같고 해당 사건 진행 현황은 별지 2 '재일동포 재심사건 진행현황(2015.10.10.현재)'¹³과 같다. 물론 당연한 것이겠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국가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되었다.

구말모, 이종수, 윤정현, 김원중, 이종수, 김동휘, 박 박, 이현치, 조일지, 허철중, 고병택, 김정사, 유영수, 손정자, 유성삼, 김종태, 김철우, 강종현, 이 철, 이동석, 강종건, 김태홍, 박영식, 강우규, 김장호, 이주광, 김순일,¹⁴ 김명수 등

3.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의 특징 7가지

가. 경계인 재일동포를 희생양으로 간첩 창작물을 만들다.

1960년대 내지 1980년대 이르기까지, 납북어부사건, 고정간첩사건, 민청학련과 같은 시국 공안사건 등 많은 반공법·간첩조작사건이 만들어졌다. 이들은 대부분 방어권이 취약하거나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이었다.

재일동포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재일동포'를 간첩조작사건의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재일동포는 남과 북도 아닌 제3자가 아니라 남과 북도 어느 곳과도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경계인이다.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재일동포는 일본의 사상·양심의 자유 속에서 나고 성장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의 실체를 알지 못하거나 이해할 수 없었고, 한국의 법과 생활, 한국어에 미숙하였으므로 간첩조작의 쉬운 먹잇감이 되었다. 나아가 막상 불법 체포·구금 되었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생활하는 가족들 또한 한국사정에 어두워 방어력이 극도로 취약하였기 때문에 언제 누가 왜 어디로 체포해서 데려갔는지 알 수 없었으며 면회도 제한되었다.

특히 재일동포들은 일본에서 앞뒷집, 또는 혈연, 학연 등으로 인해 조총련 관계자와 한면이 있거나 만나는 일상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조총련 계열이나 유학동 출신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재일북한 공작원을 통한 사상학습, 지령수수, 한국으로의 잠입·탈출로 조작하기에 용이하였다. 더군다나 박정희 군사정권에 반대했던 소위 한청 등 민단 비주류¹⁵는 더욱 간첩으로 조작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였다.

특히 피해자를 사상지도하고 한국에 잠입·탈출하도록 지령했다는 재일북한 공작원{고병택에게는 서선웅, 구말모에게는 아예 김명불상자로 기재되어 있고, 김태홍에게는 이00, 나까무라(中村), 이철에게는 서세원, 다나카¹⁶ 등등}의 실체가 법정에서 증거로서 밝혀진바

12 ()안 숫자는 체포당시 연령

13 본 별지 명단 4.9통일평화재단이 발행한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간첩조작사건' 자료, '재일동포 재심사건 진행상황' 자료 등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14 그 외에도 4.9통일평화 재단이 발행한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간첩조작사건'에 따르면, 재일동포사건과 구별하여 '일본 관련사건'으로 재심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는 오진영(대법원 2013도1313판결), 김용담(광주고등2012재노6 판결), 오성재(서울고등2014노11판결), 조봉수(대법원 2013도811판결), 강희철(제주지방2005재고합2판결), 최복남(대법원 2010도17458), 양한병(대법원 2013도14594판결), 신귀영(부산지방 2007재고합3 판결), 김장길(대법원 2011도17717판결), 차풍길(서울중앙20107재고합23판결), 최양준(대법원 2010도6264판결) 오주석(대법원 2010도8927판결), 곽종대 등(대법원 2012도643판결), 김상순 (대법원 2010도2818판결), 고창표(대법원 2012도9355판결), 이장형(서울중앙2008재고합13판결), 류한기(대법원 2011도16368판결), 구명서(대법원 2010도15128판결), 김양기(광주고등 2008재노1판결), 구명우(대법원 2011도11517판결), 김철(대법원 2010도3401판결) 등을 언급하고 있다.

15 김효순, [조국이 버린 사람들] 서해문집, 20쪽

16 이철에 대한 재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2.9.선고 2011재고합54판결 12면 이하 참조)에 따르면 '이사건 공소사실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북한 공작지도원인 '다나까'를 소개시켜두었다는 서세교는 2011.6.4.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자신은 다나까라는 인물을 알지 못하며 피고인에게 그를 소개시켜 준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증제5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게다가 이사건 기록상 피고인의 진술 외에 '다나까'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 여부 또는 그가 북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는 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 공작지도원 '다나까'의 존재를 부인하기까지 하였다.

없었지만, 결국 주일본 영사관에 근무하는 중앙정보부 요원이 작성한 영사증명서¹⁷로 증명되었다.

이는 태풍에 밀려 월북하였다가 간첩이 된 납북어부, 막걸리 국가보안법이나 긴급조치 위반 사건, 그리고 최근 유우성 간첩조작사건과 같이 한국 정세에 어둡고 법적지위가 불안정하거나 정권 비판세력인 소수자·약자를 '표적'으로 삼아 공안탄압을 해왔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나. 영장 없는 체포 및 장기간 불법구금에 의한 알리바이 창작

피해자들의 공통된 기억 중의 하나는 보안사, 중앙정보부 등에 체포·연행되어 갔을 때 살아온 일대기에 대한 자술서 내지 진술서를 쓰는 고통이다. 영문도 모르고 체포되어 장기간 불법 구금당하면서 쓰고 지우고 쳐고 다시 쓰고, 맞고 다시 쓰는 등 끊임없는 반복을 통하여 조금씩 '간첩' 알리바이를 숙지해 간다. 구00는 30여 페이지 이상의 동일하거나 조금씩 상세한 진술서를 4번 쓴 것이 공판정에 제출되어 있다. 불법 구금하에서 쓰고 쳐고 다시 쓰는 '공작'과정을 통해 간첩으로 창작·왜곡·과장되고 스스로 간첩이 되어가는 것이다.

별지 기재 불법구금 기간과 같이 피해자들은 최소한 12일에서 51일¹⁸에 걸친 불법 구금 중 수차례 쓰고 쳐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무력해지고 한시라도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사관이 유도신문 등을 통해 요구하는 일정한 알리바이를 창작하고 숙지되어간다. 만난 것은 접선이 되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건네준 1만엔은 공작금이 되며, 건네준 책은 암수표 단어집이 된다.

이러한 수차례 반복 과정을 거쳐 피해자 본인 또한 그렇게 행위 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스스로 간첩이라고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낮과 밤, 날짜관념이 없어지는 혼돈한 상황에서 허구와 진실이 혼재되어지다 결국 허구가 진실이 된다.

다. 상상할 수 없는 고문, 드디어 간첩이 만들어지다.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알 수 없는 밀실, 또는 남영동 또는 서빙고 보안 분실, 혹은 남산 중정에서 표현할 수 없는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무자비한 폭행, 잠 안 재우기, 전기고문,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 등 반인권적 고문을 당하였다. 특히 몇몇 여성은 보안사 등에서의 고문 가혹행위를 발설하기 못하기 위하여 행해진 강제추행, 강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였다.

당시 재일동포 피해자들은 국내 시국사범들과 달리 변호인, 가족들의 면회나 조력을 받지 못한 절해고도(絕海孤島)에서 수사기관의 '승진', '포상', '총성'을 위한 '특별한' 희생물이 되었다. 그러하기에 피해자들은 차라리 수사관이 내가 무엇을 시인해야하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말해주었을 때 오히려 더 이상 고문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수사관에 대해 고마운 마음마저 생겼다고 증언하고 있다.

고○○은 출소 후 1995년경 작성한 '나의 기록'라는 수기를 통해 '만일 '내가 북한에 가 본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북한 자리에 훤했더라면 갔다 왔다고 말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들의 협박과 추궁은 그렇게도 무서운 것'(29면)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아래는 김00에 대한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결과보고서에 밝힌 보안사 조사내용을 기재한 내부 문서이다.

工 作 運 行		
年月日	工 作 內 容	備 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득유지로 한반도에 올라온 간첩들이 아름더 정신적인 긴장을 시키자는데 참여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제 두사면 4km 直入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단들은 대체로 암수록과 간사적인 긴장을 하며 설득할 것을 주니 하자. 설득한다 는 편지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득 두사면 1km 과 고래 입을 주며 그로 자동차 운전장치는 장상상 그동이 여자 차를 빼기와 함께 차량을 차운 시위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우 상이한 일자 차량의 차운이 혼란이 되는 차량은 차운한자 주고 차운 차운을 차운 차운 차운 등에 차운에 차운을 차운	기록

<김○○사건 관련 기무사 공작일지 내용 중 일부>

17 진화위.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744쪽

18 현재까지 최종 불법구금일수는 김장호 51일이다.

앞에 적시한 공작과 「공작진행일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사관들은 김태홍¹⁹이 조총련 계와의 연관성을 부인하자 '설득보다는 한번쯤 육체적인 압박과 아울러 정신적인 긴장을 시키자는데 합의'하였고, 강력 수사관(조부장, 맹○○, 박대리, 김○○ 등 4명)을 투입하여 '간단한 육체적 압박과 정신적인 긴장을 주며 자술할 것을 요구하자, (김태홍이) 자술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설득 수사관 1명과 교체 입실하여 '스스로 자술치 않을 경우는 항상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와 함께 대상자를 설득시키자, 매우 상기 된 얼굴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조총련 계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자술하였음'으로 기록되어 있고, 공작일지에는 조사 기간에 잠을 안 재워가며 철야 조사를 한 상황이 시간대별로 모두 기록되어 있어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알 수 있다.²⁰

라. 중앙정보부 직원이 작성한 '영사증명서'에 의한 유죄판결

영사증명서는 해외거주 교민이 공관에 나와 혼인관계나 부동산 거래 관련 서류, 은행 잔고 증명서 등의 공증을 요청하면 영사가 확인을 거쳐 발부하는 문서²¹로서 민사관계나 신분관계 등에 대한 '사실 확인'문서일 뿐이다. 따라서 영사가 형사상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작성하는 것은 그 자체가 수사 활동으로서 영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이다.

김정사에 대한 진화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판결의 주요증거 중 하나인 중앙정보부 소속 주일대사관 영사가 작성하여 공판에 제출한 「영사증명서」는 정식 외교문서가 아니었고, 공정증서로서의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달랐음에도 유죄 증거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김정사, 유성삼에 대한 형사 재심 재판부²²또한 '영사증명서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정락중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취득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 조항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 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바,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 거주'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을 것인데(2002.3.26선고 2001도5666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정락중을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위 영사증명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도 볼 자료도 없다. 결국, 위 영사증명서는 어느 모로 보나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한편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현재 재외공관 영사가 발급해 주는 것은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주재국 정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영사확인」과 사이이 작성한 사문서에 대한 「영사인증」이 있으며, 위 법상 영사가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발급해주는 「영사증명서」제도는 없었음을 확인'²³하였다면서, '이현치, 김정사, 김양기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자백 이외에는 사실상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영사직위를 가진 안기부 직원이 본부의 업무지시에 의해 일본에서 작성하여 보낸 서류가 영사증명이라는 명목으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심지어,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주일 한국대사관은 「영사증명서」제도가 30년 전에 있었는지 여부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영사증명대장」도 당관(영사부)에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주일 한국대사관 - 13310)²⁴고 밝히고 있어, 아예 영사증명서를 작성할 법적 근거도 없이 중앙정보부 또는 안기부 직원이 사적으로 작성한 서류가 그대로 '재일북한 공작원'에 대한 증거로 그대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²⁵

19 김00에 대해서는 2012.8 형사재심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재노52)되어 2015.6.11 재심개시결정이 났으나, 검찰이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항고함으로써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20 김○○ 사건 기록 제 5권 220쪽, 1981. 9. 연행 당시 상황부터 9.19 까지 신문 상황이 일자별 시간대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데, 이 문서는 작성자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상부의 결재를 받은 문서인지 확인할 수 없었으나, 1979년 작성된 동일한 양식의 김00 관련 공작문서에 당시 공작과장의 결재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국방부 과거사 위원회는 1981. 9. 공작진행일지 또한 공작과에서 작성한 문서라고 판단하였다.

21 김효순, [조국이 버린 사람들] 서해문집, 193쪽

22 서울고등법원 2011.9.23. 선고 2010재노3 판결(김정사, 유성삼) 등 참조

23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간첩조작 의혹사건] 조사결과 보고 2007.11.12., 4쪽

24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전계서, 7쪽 각주 3

25 한편 범민련 이규재와 2인 국가보안법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731. 348 판결)에서도 주일본 대사관 영사 권순윤 작성 '영사

2014년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에서 등장한 중국 영사관 영사증명서 또한 과거 이러한 위법한 관행의 잔재로서 수사기관이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증거를 조작해왔고 조작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마. 중정과 보안사에 의한 '간첩조작' 경쟁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의 주체는 중앙정보부 및 그 후신 안기부, 보안사로서 서로 경쟁적으로 창작하였고, 특히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이후인 1980년대에는 보안사에 의한 간첩조작이 두드러졌다.²⁶ 이는 1970년대 말 권력실세였던 중앙정보부가 1980년대 실권을 장악한 보안사와 경쟁에서 밀린 것을 말해준다.

[그때 그 사람]²⁷이라는 영화는 초반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재일동포들, 특히 조총련이나 이북 쪽이랑,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잖아. 그럼 보안사가 개들 간첩 만드는 것 완전히 식은 죽 먹기라니까. 북조선에서는 세금을 안내. 그것 하나 맘에 들더라고 마연, 제3조2항 북괴찬양, 그냥 인사조로 아 예 그렇겠군요. 맞장구치지, 그럼 제3조.3.4.5항 고무찬양회합, 이번에 남조선 가시면 고향소식 좀 전해주십시오. 그것은 지령 사항. 그래서 그 인간이 입국하면 잠입, 친구의 고향에 내려가면 탐문, 그 일본행 비행기로 타고 돌아가면 탈출, 돌아와서 전화로 당신 고향 개고기 맛은 일품이야 라고 말하면 통신 연락의 보고가 되는 거고, 그래서 보안사애들이 김포공항에서 내내 매일 죽치고 있는 거야. 간첩후보들 골라내려고. 그 새끼들 그것 때문에 출세한 거야. 특진해서 장군 해 먹고...]

당시 구 육군보안부대령(1977.9.26. 대통령령 제870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²⁸ 제1조에서

확인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되었으나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부인한바 있다.

26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밝힌 바와 같이, 중앙정보부의 일본관련 간첩사건은 319건이고 그중 73건이 보안사(기무사)사건이었던 점에 비추어 절대다수는 중앙정보부, 안기부에 의한 간첩조작사건이 많았다. 1980년대 이후 보안사에 의한 간첩조작사건은 김태홍(1981년), 이현치(1982년), 박영식(1982년), 박종수(1982년), 박박(1983년), 조일자(1984년), 윤정현(1984년), 허철증(1984년) 등으로 어린 '유학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많아지는 경향을 가진다.

27 임상수 감독, [그때 그 사람] 2005

28 당시 보안사령부는 육군특무부대령 [시행 1957.11.21] [대통령령 제1316호, 1957.11.21, 제정]에 의하여 방첩수사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나, 위령에는 구체적인 보안사 내지 특무부대의 수사권한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엄밀히 군법회의법 등 법령에 의한 방첩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육군특무부대(특무대) ---> 육군보안사령부 ---> 육군보안대(1977.9.26 제정된 국군보안부대령) ---> 기무사로 순차 조직명칭이 변경되었다.

는 '육군에 보안 및 방첩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보안부대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령 제2조에서는 '보안부대는 보안사령부와 지구보안부대 및 보안교육대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군법회의법 제43조 제2호, 제44조에서는 법령에 의한 방첩부대에 소속되어 방첩사무에 종사하는 장교, 준하사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군법회의 관할사건만을 수사하도록 그 권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²⁹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또한 '○ 민간인에 대한 보안사의 수사권은, 군사상의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경우(군형법 제13조 제2항), 부대·기지·군항지역 등에서 간첩하거나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동조 제3항)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민간인이 동 지역이외에서 국가기밀을 누설하여 범한 간첩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의 수사권은 경찰과 안기부 및 검찰에 있다고 할 수 있다'³⁰면서 보안사의 민간인 재일동포에 대한 수사를 위법한 것임을 인정한바 있다.

아울러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 위원회는 '보안사가 안기부의 조정·통제 하에 간첩 사건의 내사와 수사를 직접 하였으나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은 없으므로 이를 은폐하고 형식적인 적법 요건을 갖추기 위해 안기부 수사관의 명의를 차용'³¹하였으며, 김정사, 김태홍, 이현치, 김양기 사건에서도 보안사는 자신들이 수사한 사건들을 안기부 수사관 명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안기부 명의로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의견서 등이 작성되고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수사 과정에 해당 안기부 수사관은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안기부와 보안사가 공모하여 작성자, 작성기관을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바. 전향공작 및 사회안전법에 의한 피해

사상전향제도는 사상범으로 붙잡힌 좌익수들이 사상전향을 하지 않으면 가석방 여부 및 교도소 내에서의 처우- 서신, 면회, 독서, 의무과 진료 및 약처방 등- 를 달리하여 차별화

29 서울고등법원 2011.10.12 선고 2010재노81 판결 (피고인 강종현, 서광태, 박종열) 6쪽, 서울 고등법원 2010재노40 판결(피고인 이주광) 5쪽 이하 참조

30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전계서 4쪽

31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전계서 6쪽

고 물리적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가 수형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꾼다는 '전향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사상전향제도의 기원은 일제 강점기 시대 사회주의자들과 조선의 독립군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치안유지법에 있다. 1933년 일제는 '사법당국통첩'을 제정, 구속된 사상범들에 대해 '전황에 대한 충성서약'을 석방조건으로 내세웠고, 이 같은 전통은 해방 후에도 그대로 수용돼 간첩 및 좌익사범들에게 적용됐는데, 이로 인해 사상전향을 거부한 인민군 포로나 남파간첩, 조작간첩 등 비전향수³²는 모든 행형상의 누진처우 대상에서 제외되고 온갖 불이익 처우를 받았다. 또 사상전향을 강요받고 그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사망하기에 이르렀다.³³

특히 1953년부터 1955년 사이 구속된 상당수 좌익수들이 4·19 혁명 이후 20년형으로 감형 받고 만기출소를 기다리던 1973년, 중앙정보부와 법무부는 이들의 출소를 막기 위해 전향 공작 전담반³⁴을 교도소에 배치하여 좌익수형자³⁵에게 집중적으로 '사상 전향공작'을 시행했다. 또한 1975년엔 비전향으로 출소하였거나 형기가 만료된 좌익수들을 전향시키기 위해 '사회안전법'이 제정되어 이들을 보안감호라는 명목하에 평생을 판결도 없는 행정처분³⁶으로 보호감호소 안에 가두어둘 수 있게 되었다. 사회안전법은 1989년 폐지될 때까지 155명이 재판도 없이 구금되었고, 이중 15명이 육사하였다.³⁷

대부분의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은 전향공작에 또다시 시달렸다. 서준식은 1978.5.27. 7년 만기 출소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2년마다 보안감호처분이 수차 갱신되어 형

기보다도 3년 많은 10년을 복역하여, 1988.5월 체포된 지 17년여만에야 출소할 수 있었다.³⁸ 강종건(고대 법대 3년)은 11.22사건으로 1975.10.25. 체포된 이래 징역 5년 만기 복역³⁹하였음에도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보안감호에 처해져 1981.2.14.부터 보안감호 처분 해제일 출소일인 1988.6.10.까지 추가로 7년 4개월여를 복역⁴⁰하였다.⁴¹

한편, 구○○는 항소심 판결 확정에 따라 1972.11.23. 대전교도소⁴²로 이송된 후부터 계속해서 전향강요를 받았다. 당시 구○○는 보안사에서 온갖 고문과 자포자기 등으로 인해 폐결핵과 중이염을 앓고 있어서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상황에서 사형수 옆 1호사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외부인과의 접견, 약의 처방이 절실하고도 중요하였다. 대전교도소 측은 결국 약과 접견 등을 미끼로 전향을 강요하였다.

사. 일본 구원회 활동을 통한 구원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은 국내에서 간첩단 사건의 발표되었든 되지 않았든 '조국' 대한 민국에서는 곧바로 '간첩'이라는 이름으로 잊혀졌다. 피해자들에 대한 국내 언론이나 지식인들의 시각은 '무시무시한 간첩'이었을 뿐 이었고, 구치소에서 조차 일반 재소자나 심지어 국사건 재소자들 사이에서도 가까이 하기 어려운 기피의 대상이었다.

32 해방 이후 남한에서 사상전향제도는 1) 한국전쟁 유격대 활동과 관련하여 체포된 사람들, 2) 남파공작원, 3) 통혁당, 인혁당, 남민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 등 남한의 자생적 변혁운동의 맥락에서 체포된 사람들, 4)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어부, 고국에 유학갔다가 체포된 재일동포들, 5) 1980년대 들어 늘어난 공안사범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경우 간첩으로 조작된 경우가 많다고 민가협이 밝혔다.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서재일 [전향공작과 의문사] 중 592면 재인용, 진화위 2009.11.3. 결정 [전향공작 관련 인권침해사건] 참조

33 전향공작 과정에서 사망한 사례로, 유신사절 남파공작원으로 체포된 최석기는 전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974.4.4 교도당국이 일반죄수들을 시켜 폭행, 사망하게 했고, 1969년 위동맥 출혈이었던 윤석만, 80년 폐결핵에 걸린 유재인, 탈장이 일어난 신창길 등은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술과 치료를 거절당해 육사한 사례들이다.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서재일 [전향공작과 의문사] 중 611 정리, 의문사에는 최석기, 박용서, 손윤규, 변형만, 김용성에 대해서 전향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하였다.

34 1973년 3월에 전향공작 전담교회사를 공개채용하였다.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서재일 [전향공작과 의문사] 중 605면 재인용

35 1960.4.19. 직전 대전형무소에는 비전향 장기수가 약 2백70명 정도 있었으며, 4.19 직후 비전향 장좌의수들이 사면·석방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다만! 전국 형무소에 수감중이던 좌익수에 대한 대폭적인 감형조치로 무기는 20년으로 감형되고, 15년 이하의 유기형을 선고받은 전향자는 모두 석방되었으며, 비전향자는 잔여 형기가 3분의 1이나 3분의 2로 감형되었다. 다만 간첩죄 무기수만은 이 조치에 제외되었다.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서재일 [전향공작과 의문사] 중 592면 재인용

36 현법재판소 88현가 5.8.(병합)결정, 89현가 44. 85누343, 보안감호 처분 갱신 결정무효 확인

37 특히 의문사위 조사과정에서 전향관련 육증사망자는 1965년 이후 77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하였다. 사 진상규명 위원회, 서재일 [전향공작과 의문사] 중 607면 재인용

38 서준식은 '사상전향제는 인간의 가장 깊은 성역에 대한 국가권력의 폭력적 침입이며, 국에 달한 정치적 폭력의 표현이다'라고 밝혔다. 강용주는 '내가 설령 혁명기가 아니고 실천적 휴머니스트 내지는 인권운동가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권력앞에 게워낼 필요는 없는 법이다'라고 밝혔다.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서재일 [전향공작과 의문사] 중 588면 재인용

39 강종건은 1975. 10. 26. 영장 없이 체포되어 1975. 11. 1.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불법 구금되었고, 결국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으로 기소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988, 993(병합)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물수형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76노1178)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물수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76도3097)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40 강종건은 1981.1.29.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안감호처분의 결정을 받아 위 확정판결로 5년형(1,937일)의 집행을 마친 1981.2.14. 보안감호처분 집행이 개시되어 3회(1983. 1. 13.자 보안감호처분 기간갱신 결정, 1985.1.17.자 보안감호처분 기간갱신 결정, 1987. 1. 22.자 보안감호처분 기간갱신 결정)에 걸쳐 보호감호처분 기간갱신 결정되어 보안감호소에 수용되었다가, 보안감호처분 집행개시일로부터 7년 4개월 날짜(2,672일)만인 1988.6.10. 보안감호처분 면제결정에 따라 석방되었다.

41 강종건은 2011.4.28. 재심을 청구하여 2012.9.25. 재심개시결정을 받았고, 2014.3.28. 서울고등법원 2011재노74호로 무죄판결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26. 확정되었다.

42 1961년 7.29 제51회 각의에서 좌익미전향 수형자 집결수용을 의결하여 전국에 있던 비전향 좌익수 800명을 대전교도소에 집결 수용하였다. 이때 비전향 장기수가 7백65명이었고, 여성 30명까지 합해 모두 800여명에 이르렀다.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서재일 [전향공작과 의문사] 중 599면 재인용

그리고 1970.1.16.에는 '최근 북괴는 무력침공을 위한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적의 계획라 기습 등 불의의 사태하에 있어서 좌익수형자의 탈취·석방 등'이 예상되므로 전향·미전향을 불문하고 4곳(대전, 대구, 광주, 전주 - 필자)의 교도소로 1월 31일까지 전원 이송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서재일 [전향공작과 의문사] 중 602면 재인용

그럼에도 피해자들을 위한 일본에서의 ‘구원회’ 움직임은 실로 오랜 시간 동안 양심과 희생을 통한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다. 재판정 참석을 비롯하여 탄원서 조직, 구치소·교도소 면회, 편지나 엽서보내기, 피해자 가족 돕기, 윤엔 인권위나 국제적십자사, 국제 법률가 협회 등에 대한 호소,⁴³ 일본 참의원 등 의원들을 통한 구명운동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구원운동이 있었다.

요시마쓰 시게루 목사,⁴⁴ 여성화가 마쓰이 야요리 등 일본 지식인들의 운동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향한 눈물겨운 여정이었다. 이철, 강종현, 조득훈, 이동석 구원회 뿐만 아니라 손유형, 최연숙 구원회, 구말모, 고병택 등 대부분의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들에게는 초·중·고교 등의 동창이나 지식인, 동향인들로 구성된 구원회가 조직되었다. 아마도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사형에서 무기로, 무기에서 징역 20년으로, 또는 형기의 1/2 또는 2/3 정도로 감형 받아 그나마 ‘조기’ 출소하게 된 것은 이를 구원회의 눈물겨운 투쟁과 정치 외교적 활동에 힘입은 바 크다.

예를 들면,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고병택이 1974.4.4 갑자기 고국방문길에 체포되자 고병택이 재직 중이던 일본주재 일본 통상산업부 산하 [재단법인 해외기술자연수협회] 직원들을 비롯한 재일동포 등은 ‘고병택씨를 지키는 관서 모임’(이하 고병택 구원모임이라 한다)을 만들어 고병택이 대전교도소 이감 후 출소할 때까지 탄원서 작성제출, 법정방청, 접견 등 끊임없는 방법으로 석방 노력을 전개하였다.

특히 고병택이 다녔던 재단법인 해외기술자연수협회는 고병택이 불법적으로 체포되어 구금되자 모국인 대한민국이 재일동포인 원고에게 행한 가혹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호즈미 고이치 선생님을 비롯한 해외기술자연수협회 직원들은 “해외기술자연수협회 사무소에 있는 고 선생님의 책상과 책꽂이는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 책과 책꽂이는 고 선생님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 선생님 5년 후, 10년 후, 어쩌면 20년 후에 돌아오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자리에서 고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을 거에요”라는 편지를 통해 격려하였고, 결국 고병택은 1981.8.15. 출소한 이후 과거에 사용했던 사무용 책상과 책꽂이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정년퇴직 할 때까지 위 협회를 다닐 수 있었다.

4. 간첩조작 사건의 해결방향을 위한 방안

가. 가해자 국가권력에 의한 과거사 해결

과거사청산의 과제는 진상규명, 피해자 구제와 보상 및 명예회복, 가해자 처리,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 및 화해, 국가의 조치, 역사 기술, 기념사업 등을 포함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일동포 간첩 조작사건은 국가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억울하게 죄를 씌운 것이므로 마땅히 국가가 나서서 진상규명 절차를 통해 그 진상을 밝히고 밝혀진 피해자들에게는 옹당한 사과와 일괄배상, 그리고 명예회복을 위한 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간첩조작사건의 근거가 된 국가보안법 등 악법의 철폐와 더불어 아직도 남아 있는 보안관찰법 또한 전향제도의 유제로서 폐지됨으로서 비로소 개인과 국가차원의 과거사 정의 회복이 될수 있다.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개의 진화위 법 개정안 또는 유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진상규명 법안 등 과거사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채 방치되고 있다. 특히 재일동포를 위한 일괄 입법안은 사실상 그 피해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 피해자의 조작 유형의 다양성 내지 개개인의 활동의 지형,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차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입법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형사 재심, 국가배상을 통한 지난한 구제

그런 면에서 거칠고 긴 시간이지만 형사재심절차는 그나마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형사재심절차는 ‘진실’을 회복하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형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이다.

대부분의 형사재심사건⁴⁵은 아래와 같은 증거법 절차 위반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단계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은 피고인이 민간인에 대

43 김효원, [조국이 버린 사람들] 2015. 288면 이하

44 김효원, [조국이 버린 사람들] 2015. 261면 이하

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7.23선고 2011재고합 39판결(구말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내조76 판결(고병택), 서울고등법원 2011.9.23. 선고 2010재노3 판결(김정사, 유성삼) 등 참조

한 수사권한이 없는 보안사령부 또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후 장기간 영장 없이 구금되어 협박,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거나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② 피고인에 대한 검찰 단계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약도, 본인의 출입현황 등은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보안사령부에서와 거의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입장이 없으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으며, ③ 압수조서는 영장주의에 위배된 증거로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으며, ④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000 등의 각 진술증거 서류, 압수조서, 대일 조회의뢰, 재심대상사건 및 항소심의 각 공판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위 증거들 중 피고인이 재심대상사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기재는 수사단계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법정에서 진술할 때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김○○가 북한 또는 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와 접촉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탈출, 잠입, 국가기밀누설, 간첩 미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굳이 말하자면, 재일동포간첩조작사건은 영장 없는 체포 및 장기간 불법구금, 고문·폭행 등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 그리고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찰 및 재판단계에 까지 계속되었고, 압수조서 등은 영장주의에 위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또한 재일북한 공작원이 북한 또는 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탈출, 잠입, 국가기밀누설, 간첩 등의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따라서 형사재심절차는 최소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불법체포, 감금, 고문 등 가혹행위 등에 의한 공소사실의 창작, 왜곡,과장 등을 형사절차를 통해 확인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의 궁극적 '구원'은 일괄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차선책으로 지난한 과정일지라도 형사재심 및 국가배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4. 마치며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철은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조작

의혹사건은 한국의 분단과 재일동포 사회의 역사적 구조적 배경에 대한 이해와 조명을 기초로 파악되어야 한다'면서 '분단 이후 민단과 총련이 분열되면서 동포사회에서 민족에 대한 관심과 통일운동은 순수한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단죄되어 왔다'고 비판하였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대학생들의 저항에 직면한 유신정권과 이를 계승한 전두환 군사정권은 일본에서 유학 온 재일동포 모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간첩 사건을 만들어 발표하였다. 재일동포 유학생들은 일본사회의 민족차별 속에서 그리운 고국을 찾아왔지만, 이들을 반긴 건 보안사와 중앙정보부, 안기부였다.

다행히, 국가폭력 피해자로 수십 년간 분노와 고통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왔던 재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누명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더불어 사법부의 형사 재심개시결정 및 재심무죄 판결을 통하여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100여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일괄구제는 요원한 실정이며, 국가는 아직까지 사과와 반성 한마디 없다.

진상규명 및 일괄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인 국내 여건의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 지루한 과정이 되겠지만 조심스레 재심청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고난에 찬 세월을 견뎌온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께 존경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별지1) 진화위 재일동포 진상조사 보고서 '사건 일지'⁴⁶

연도	사건명	수사기관
1971.4.20	재일교포 유학생 서승, 서준식 형제 간첩사건 발표	국군보안사령부
1971.11.20	재일동포 대학 강사 구말모 등 간첩사건 발표	국군보안사령부
1973.5.28	재일교포 최창일 간첩사건 발표	국군보안사령부
1974.4.3	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사건 발표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
1974.4.18	재일교포 고병택, 김영작 간첩사건 발표	중앙정보부
1974.4.28	재일교포 최철교 사건 발표	국군보안사령부
1974.6.28	재일교포 유학생 김승호 간첩사건 발표	서울지검 공안부
1974.11.5	재일교포 진두현 사건 발표	국군보안사령부
1975.4.2	재일교포 김달남 간첩사건 발표	중앙정보부
1975.11.22	1차 모국유학생간첩사건('11.22사건') 발표 관련자 : 김오자(부산대), 김철현(한신대), 김종태(서울대), 김원중(서울대), 하경조(서울의대), 이원이(부산대), 장영식(서울법대), 김동희(가톨릭의대), 강종건(고려대), 최연숙(재외국민교육연구소), 백옥광(재외국민교육연구소)	중앙정보부
1975.12.11	2차 모국유학생간첩사건 발생 관련자 : 강종현(서울의대), 이철(고려대 대학원), 이수희(재외국민교육연구소), 조득훈(재외국민교육연구소), 이동석(한국외대), 양남국(서울대)	국군보안사령부
1977.4.18	재일교포 유학생 유영수, 유성삼, 김정사 간첩사건 발표	국군보안사령부
1981.6.9	재일교포 손유형 간첩사건 발표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안전기획부
1981.10.9	재일교포 유학생 이현치, 이주광 간첩사건 발표	국군보안사령부
1981.10.13	재일교포 유학생 김태홍 간첩사건 발표	국군보안사령부
1981.11.6	재일교포 유학생 진이직 간첩사건 발표	국군보안사령부
1982.5.19	재일교포 박영식 간첩사건 발생	국군보안사령부
1982.11.6	재일교포 유학생 이종수 간첩사건 발표	국군보안사령부
1983.10.19	재일교포 박박, 서성수 간첩사건 발표	국군보안사령부

별지2)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 재심 진행상황(2015. 10. 10 현재)

이름	수사기관	불법체포 일시	불법구금기간	위반죄명	1심사건 검사	2심사건 검사	3심사건 검사	선고형량/ 복역/석방일	사건당시 직업방문 목적	재심신청일	재심결과	담당변호사	국가/기관조사 여부 / 비고
1 김우철	목포 경찰서 수사관	1975.2.13	16일	국가보안법 간첩반공법	75고합36 허진명 서석구 황태연 심상평	광주고등 75노225 김재주 양영태 김웅렬	대법원 75도3095 양병호 흥순협 이규구 강안희	10년 / 6년 1981.8.15	여관, 식당 연조소매업 친지방문	2009.8.3	광 주 고 등 2010.1.28선고 2009재노14 무죄확정	최명모	2009.2.16 진화위 진상규 명공동피고인 김이철 무죄확정
2 이종수	보안사	1982.11.6	39일	국가보안법 (2전동) 반공법	84고합1244 이재훈 서명수 강일원 최연희	서울형사 85노1599 김석수 박성선 유창식	대법원 83도2812 김덕주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10년 / 5년 8 월 / 1988.6	고려대 재학	2009. 4. 2010. 7.15선고 2009재노42 무죄확정	서울고법 2010. 4.8 이상희	2008. 9. 진화위 진상규 명공동피고인 김영순	
3 윤정현	보안사	1984.8.27	43일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84고합1244 이재훈 서명수 강일원 최연희	서울형사 85노1338 오병선 김정남 양태승	대법원 85도1939 이정우 김태균 신정철 김형기	7년 / 4년 1988.7	고려대 재학	2010. 1. 2011.11.4295 무죄확정	대법원 2011. 11.10선고 2011재4295 무죄확정	2009. 10. 진화위 진상규명	
4 김원중	중정	1975.10.17	22일	국가보안법 반공법 간첩	75고합998 허정훈 이공현 김의암	서울형사 76노1180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대법원 76도3571 김운행 이영선 민문기 김용칠 2심 서동관	7년 / 7년 1982	서울대 재학	2011. 4. 2012.3.29선고 2011내노73 무죄확정	서울고법 2011. 4.23 장경국	2011. 4. 진화위 조사증지	

46 2012.10.20. 민교협 등 토론회 '유신체제와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진실과 의미', 안병욱, [한국의 과거사 정리와 재일동포 조작간첩 문제] 3쪽 재인용

이름	수사기관	불법체포 일시	불법구금기간	위반죄명	1심사건 검사	2심사건 검사	3심사건 검사	선고형량/ 복역/석방일	사건당시 직업방문 목적	재심신청일	재심결과	담당변호사	국가기권조사 여부/비고
5 김동화	충정	1975.10.13	20일	반공법 국가보안법 (간첩등)의 국한군리법 간첩	서울형사 75고합988, 933병합 심훈·종·조용무 양승태	서울고등 76도1178 한정진·정현석 김종배	대법원 76도3097 김윤행·이영섭 민문기·김용철	5년 / 4년 1979.12.25	카톨릭대 재학	2010. 7.	2012.5.24선고 2012도528 무죄확정	김형태	2010. 6. 진회위 진상규명
6 박박	보안사	1983.8.10	40일	국가보안법 (간첩등)의 국한군리법 간첩	서울형사 83고합1083 신성택·정재훈 유승정 정형근	서울고등 84도642 노승우·최창 이두환	대법원 84도1846 윤일영·강우영 김덕주·오성환	10년 / 5년 1988.8.15	유학원 근무	2010. 11.	2012.5.24선고 2012도528 무죄확정	이석태	2010. 6. 진회위·진상규 명 공동피고인 윤용진 이정후 (무죄확정)
7 이현자	보안사	1981.10.9	17일	국가보안법 반공법	서울형사 84고합215 신성택·전호숙 유승정 정형근	서울고등 82도795 최정영·이강국 황우아 조우현	대법원 82도1701 강우아·김종서 이정우·신정철	무기 / 15년 1996.8.15	삼성전자 근무	2010. 7.	2012.9.27선고 2011도143 무죄확정	김형태	국방부 조사결과발표, 진회위 조사중지
8 조일자	보안사	1984.9.1	29일	국가보안 (간첩) 반공법	서울형사 84고합1231 이재훈·서명수 강일원 정진규	서울고등 85도1394 윤상목·박준수 양상승 장용수	대법원 85도1876 오성환·김덕주 윤일영·김덕주	7년 / 4년 1988.6.30	성균관대 재학	2010. 11.	2012.9.27선고 2012도1438 무죄 확정	이석태	2010. 6. 진회위 진상규명
9 구말모	보안사	1971.11.9	12일	국가보안법 (간첩) 반공법	서울형사 84고합562 서성·정재훈 김성균 정진규	서울고등 72도697 윤은영·최규봉 오병선·김병남 정성욱 설동훈	대법원 84도2545 이희창·이일규 전상석	15년 / 10년 1981.8.15	국민대 강사	2011. 5.	2012.12.27선고 2012도1274 무죄 확정	조영선	없음
10 하철중	보안사	1984. 3. 6	22일	국가보안법 (간첩) 반공법	서울형사 77고합139 허정훈·정용인 김형식 정경식	서울고등 77도985 오석락·이일환 김성만 박일홍	대법원 78도756 정태원·민문기 이일규·정만희	10년 / 2.6년 1979.8.15	서울대 재학	2011. 2.	2013.3.14선고 2012도1370 무죄 확정	이석태	진회위 조사중지

이름	수사기관	불법체포 일시	불법구금기간	위반 죄명	1심사건 검사	2심사건 검사	3심사건 검사	선고형량/ 복역/석방일	사건당시 직업방문 목적	재심신청일	재심결과	담당변호사	국가기권조사 여부/비고
11 고병태	충정	1974. 4. 4	12일	국가보안법 간첩반공법	서울형사 74고합325, 74도1403 한정진·정현석 김종배	서울고등 75도1439 김영재·주재활 이영호 0일규	10년 / 8년 1981.8.15	고향방문	2011. 4.	2013.4.11선고 2012도1371 무죄확정	조영선	없음 공동피고인 이용용	
12 김정사	보안사	1977. 4. 21	22일	국가보안법 간첩9호위반	서울형사 77고합465 허정훈·정용인 김형식 정경식	서울고등 77도1985 오석락·이일환 김성만 박일홍	10년 / 2.6년 1979.8.15	서울대 재학	2010. 1.	2013.5.9선고 2011도13603 무죄확정	이인람	2009. 11. 진회위 진상규명	
13 유성삼	보안사	1977. 4. 17	26일	반공법 간조9호위반	서울형사 77고합465 허정훈·정용인 김형식 정경식	서울고등 78도756 오석락·이일환 김성만 박일홍	3.6년 / 2.6년 1979.8.15	한양대 재학	2010. 1.	2013.5.9선고 2011도13603 무죄확정	이인람	2009. 11. 진회위 진상규명	
14 유영수	보안사	1977. 4. 15	28일	국가보안법 간첩반공법	서울형사 75고합983 서정훈·이공현 김익엽 정경식	서울고등 78도756 정태원·민문기 이일규·정만희	무기 / 7년 1984.4.1	부산대 재학	2011. 4.	2012. 5. 10선고 2012도529 무죄확정	이석태	2009. 11. 진회위·진상규 명 공동피고인 손정자 (무죄확정)	
15 김종태	충정	1975.10.12.	21일	반공법국가 보안법간첩 간첩	서울형사 75고합983 서정훈·이공현 김익엽 정경식	서울고등 76도314 전병연·최희성 김종화 서동권	7년 / 5년 1981.8.15	서울대 재학	2011. 3.	2013.7.26선고 2013도5926 무죄확정	이석태	진회위 조사중지	
16 김철우	보안사	1973. 5. 18	27일	반공법국가 보안법 간첩	서울형사 73고합479 김형기·임창원 김상칠 김영수	서울고등 74도1265 김홍근·국명덕 정재현 김인규	10년 / 6년 1975.8.15	포철고문	2011. 7.	2013.6.27선고 2012도1563 무죄확정	김철우	심재환 없음	

이름	수사기관	불법체포 일시	불법구금기간	위반죄명	1심사건 검사	2심사건 검사	3심사건 검사	선고형량/ 복역/석방일	사건당시 직업방문 목적	재심신청일	재심결과	담당변호사	국가기관조사 여부/비고
16 김철우	보안사	1973.5.18	27일	반공법국가 보안법 간첩	파기환송서 고등74노922신 정절노승두 이재후 김기우	대법원 75도252 이영남양병호호한 환진윤행	10년 / 6년 1975.8.15	포철 고문	2011. 7.	대법원 2013.6.27 선고 2012.12.563 무죄확정	실재판	없음	2010. 6. 진회위 일부 진상규명 공동 고인사망태 박종렬 등 14인 (무죄확정)
17 강종현	보안사	1975.12.2	47일	국가보안법 반공법간첩	서울형사 76고합156 전상식 제자통 흥우여 서의원 최명부 김택수	서울고등 76노1396 전병 연최훈법 김종화	사형 / 13년 1988.12.21	서울의대 재학	2010. 12. 대법원 2015.8.13 선고 2013.12.180 무죄확정	실재판	2010. 6. 진회위 조사중 지 공동 고인 민형숙 김정훈		
18 이철	증정	1975.12.11	40일	국가보안법 반공법간첩 간첩방조	서울형사 76고합167 하정훈 이공천 김의열 김택수	서울고등 76노1396 전병 연최훈법 김종화	사형 / 13년 1988.10.1	고려대 대학원	2011. 10.31 대법원 2015.12.704 계류중 무죄확정	정경숙	이석태	2010. 6. 진회위 조사중	
19 이동석	보안사	1975.11.22	35일	국가보안법 (간첩) 반공법간첩	서울형사 76고합65 이정훈 이공천 김의열 김택수	서울고등 76노1292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5년 / 4년 1980.8.15	외국어다 재학	2011. 2. 대법원 2015.9.10 선고 2014.12.786 무죄확정	정경숙	이석태	2010. 6. 진회위 조사중	
20 강종건	증정	1975.10.26	35일	국가보안법 반공법간첩	서울형사 75고합 98.8. 932병합 심훈증 조용무 양승태	서울고등 76노1178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5년 / 12년 7월 1981.2.14 (5년)	고려대 재학	2011. 4. 대법원 2014.9.26 선고 2014.12.253 무죄확정	정경숙	2010. 6. 진회위 조사중		
					서울형사 75고합 98.8. 932병합 심훈증 조용무 양승태	서울고등 76노1178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5년 / 12년 7월 1981.2.14 (5년)	고려대 재학	2011. 4. 대법원 2014.9.26 선고 2014.12.253 무죄확정	정경숙	이석태	2010. 6. 진회위 조사중	
					서울형사 75고합 98.8. 932병합 심훈증 조용무 양승태	서울고등 76노1178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5년 / 12년 7월 1981.2.14 (5년)	고려대 재학	2011. 4. 대법원 2014.9.26 선고 2014.12.253 무죄확정	정경숙	이석태	2010. 6. 진회위 조사중	
					서울형사 75고합 98.8. 932병합 심훈증 조용무 양승태	서울고등 76노1178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5년 / 12년 7월 1981.2.14 (5년)	고려대 재학	2011. 4. 대법원 2014.9.26 선고 2014.12.253 무죄확정	정경숙	이석태	2010. 6. 진회위 조사중	

이름	수사기관	불법체포 일시	불법구금기간	위반 죄명	1심사건 검사	2심사건 검사	3심사건 검사	선고형량/ 복역/석방일	사건당시 직업방문 목적	재심신청일	재심결과	담당변호사	국가기관조사 여부/비고
21 김태홍	보안사	1981.9.9	36일	국가보안법 반공법 국가보안법	서울형사 81고합145 김현무 최정수 김병재 임희운	서울고등 82노1430 이정박 윤전 신성철	대법원 82도2201 이월규 전상석 이성렬 이희창	무기 / 15년 1998.8.15	연세대 재학	2015.6.11 서울중앙 2001-4-252 재심개시 결정 항고 대법원 계류중	조영선	2007.11.12 국방부교사위 결별표, 진회위 조사중	
22 박영식	보안사	1982.5.19	23일	국가보안법 반공법	서울형사 82고합745 김성만 조미연 김기동 0증기	서울고등 82노3406 이한구 심현동 유창심 김병돈	대법원 83도1031 김태군 유암영 김덕주 오상환	15년 / 6년 1988.8.15	유학 후 사입자 방한	2011. 9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12.588 무죄확정	김형태	2010.5.11 진회위 조사중	
23 강우규	증정	1977.2.8	10일	국가보안법 반공법	서울형사 77고합221, 252 법학 김승목	서울고등 77노1423 오석락 0이우 정구호	대법원 77도3922주재 황양병호 김형준 라길재	사형 / 11년 1988.12	사입자 방한	2010.1 대법원 2015.6.20 재심계류중	이석태	2010.5.11 진회위 조사중	
24 김장호	안기부	1982.12.10	51일	국가보안법 반공법간첩	서울형사 83고합202 김성만 조대현 김기동 임희운	서울고등 83도2705 김정철 김중서 강우영 이정후	대법원 83도2705 김재봉 문복동효 유관선	무기 / 15년 1998.8.15	천체방문	2015.8 서울고등 2015.8.224 계류중	조영선	2010.5.11 진회위 조사중	

이름	수사기관	불법체포 일시	불법체포 일시	위반죄명	1심시간 검사	2심시간 검사	3심시간 검사	선고형량/ 복역/석방일	사건당시 체류방문 목적	재심신청일	재심 결과	담당변호사	국가기관조사 여부/비고
25 이주광	보안사	1981.10.8	21일	국가보안법 반공법 구국기보안법	서울형사 81고합1216 김병재 이형하 정형근	서울고등 82률223 최충영 이강국 흥우미 조우현	대법원 82도2239 이성렬 이원규 전상석 이희창	한국 민 단 동 애知현 충지부 무차장	15년 / 6년7 월1988	2014.7.14	대법원 2015도14848 계류중	장경욱	없음
26 김순일	보안사	1986.6.28	39일	국가보안법 (2년월등)	서울형사 86고합1171 김효종 노영보 여상훈 주대경	서울고등 87노853 정지형 이원국 정덕홍 곽영철	대법원 87도1341 이병우 김달식 향년당	12년 / 3년 11월 1990.5	회원법	2013.3.28	대법원 2015.8.19선고 2014도16801 무죄확정	송상교	없음
27 김명수	증정	1975.10.19	28일	국가보안법 반공법간첩 긴조9호	서울형사 75고 합1047 전상석 재차룡강기원	서울고등 76노75 고 139-27 전상석 현식김종배	대법원 76 도 3283강안희 이 10년5년 일규	유학법	2014.1.27	서울고등 2015.10.5결정 2014제노72재심 개시결정계류중	이상희	등	없음 등피고 안전방법, 나 도현재심개시 결정
28 노승일	증정	1975.10.18	14일	반공법국가 보안법간첩 간첩방조	서울중앙 75고합987 하정훈 이공현 김의열	서울고등 76노1177 전병언 최희설 김종화	대법원 76도3066 한환진 김영세 안병수 김용철	2년 / 2년 김오자 무기 / 9년 1984	부산대 대학생 (재일동포X)	2014.9.30	서울중앙 2014제고환15 계류 중	이상희	김정미(청구) 김준홍

참고자료 - <世界> 2010년 10월호

한국의 '민주화' 속의 2세일한국인

기무라 다카시 규슈국제대

간첩 날조 사건…4 반세기 시간을 넘어서

「지금까지의 고통에 대하여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잃은 시간을 되찾는 방법이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판결에 의해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제거할 수 있으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2012년 3월 29일 14시 55분, 서울 고등법원 404호실. 재판장이 피고 김원중 (61)에게 무죄 판결 선고를 내리면서 한 위로의 말이다. 「재일 한국인 간첩 날조 사건」 피해자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의 선고는 2010년 7월의 이종수 (54)로부터 9명째가 된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북의 간첩」들

100 명이상 있다고 하는 「재일 한국인 간첩 날조 사건」 피해자이지만, 2012년 8월 현재 무죄 확정이 6명 (이종수, 윤정현, 유영수, 김동휘, 김원중, 박박), 무죄 판결 선고 후, 겸찰의 항소에 의해 대법원에서 계류중이 3명 (이현치, 김정사, 유성삼), 고등법원 재심 공판중이 3명 (강종현, 조일지, 구말모), 재심 개시 결정이 3명 (김종태, 허철중, 고병택), 재심 청구중이 7명 (강우규, 이동석, 강종건, 김철우, 박영식, 이철, 최연숙) 등이다.

이들 22명 중에는 상용으로 한국 방문중에 체포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서울과 부산의 대학교 유학중에 체포되었다. 「모국」인 국적 나라 한국에 유학 (출장, 친척 방문) 한 그들은 「모국」에 의해 그 인생의 일부를 뺏겼다.

윤정현 (59)의 경우, 교토대학 졸업 후 일본의 제약회사에 근무하고 한국 고려대학교 의학부에 편입하였다. 그리고 재학중인 1984년 8월 27일, 군의 정보기관인 국군 보안 사령부 (이하, 보안사) 수사관에 의해 자택 앞에서 연행되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까지의 43일간 불법 구금되어, 구타, 물 고문, 전기 고문 등의 온갖 고문을 당했다. 그 결과, 그는 북조선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한국 유학 후 입수한 국가 비밀을 북조선에 누설하였다고 하여 징역 7년 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원래 윤정현은 보안사에 의해 기관의 예산 획득을 위한 간첩 용의 수사

대상자 명부에 올랐던 존재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후 보안사 협력자인 재일교포 폭력단 관계자 Y나 토쿄 공안의 S, 오오사카 공안의 I, 교토 부경의 F 등에게서 윤정현에 관한 정보가 다수 보내졌고, 보안사가 그를 리스트의 뒷자리에 올렸기 때문에 「북의 간첩」으로서 처벌된 것이었다.

또, 김정사 (57) 의 경우는 그의 유죄 판결이 김대중 (전 대통령) 의 사형판결의 근거가 되어 있다. 김정사는 1977년 4월에 유영수 (63) · 유성삼 (58) 형제와 함께 불법 연행·구금되어 수사 과정에서 「한민통」(한국 민주화복 통일 촉진 국민회의 일본 본부, 현 「한통련」)이나 조총련 · 북조선파의 관계가 날조되어, 그 결과 한민통이 「반국가 단체」로 규정 받게 되었다. 이 판결이 근거가 되어 1973년 한민통 결성 당시 의장이었던 김대중은 1980년 군법 회의에서 사형 판결 선고 받게 되었다. 김정사는 고문의 후유증으로 지금도 자팡이를 손에서 떼어놓지 못하고 있다.

그들 피해자에게 공통되는 것은, 체포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중앙 정보부(KCIA)나 보안사 등의 정보 기관에서 구타·물고문·전기 고문 등 온갖 고문을 받아 허위의 자백을 강요 당한 결과 「북의 간첩」이라고 날조된 점이다. 국가보안법 ·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 받은 그들은 사형에서 징역 5년까지의 판결을 받고 길면 15년, 짧으면 2년을 한국의 교도소에서 지내게 되었다.

「북의 간첩」으로서 체포된 그들은 교도소 안에서도 고생하게 된다. 당시 한국의 교도소에서는 일반수가 청색, 반정부 활동자가 녹색(혹은 노란색), 국가보안법 · 반공법 위반(간첩죄)이 붉은 마크를 가슴에 달고 있었다. 그 때문에 소내에서 「빨갱이는 싫다! 간첩은 죽어라!」고 때로 받는 일도 있었다.

대부분은 석방 후 한국에 머물지 않고 곧 일본으로 돌아왔다. 여권도 일본에서의 재류 자격도 상실한 그들에게 「편의」를 본 것은 일본 정부였다.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석방 후, 일본 대사관 관계자가 피해자를 방문하여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비행기 수속까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관계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한국 정부로부터 일본 정부에 연락이 갔었는 것이 아닌가고 한다. 즉, 교도소로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일본과 한국 양 정부의 「공동 작업」이었던 것이다.

일본에서 차별에 고생하고 또, 조국에 대한 동경으로 한국으로 건너간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고문과 교도소 생활이었다. 그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청력 등에 후유증이 남아 날마다 두통을 앓거나, 어떤 피해자는 훨채어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도 있다. 또, 피해자들 중에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어 사건 후, 한번도 한국으로 다녀가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는 말한다. 「국가보안법이 현존하는데 그런 곳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나를 체포하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는 한 한국에는 가지 못하며, 가고 싶지도 않다」고.

그럼 왜 그들은 이와 같은 피해를 입어야만 했었는가?

#폭력에 의한 지배

한국은 당시 정당성이 연약한 군사 정권 지배하에 있었다. 1961년의 군사 쿠데타에 의해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와 1979년에서 1980년에 걸쳐 쿠데타와 광주 민주화 운동 탄압을 이용하여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에게 있어서,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반정부 활동은 두통거리였다.

양 대통령에게 있어서 「북의 간첩」은 정권의 정당성 확보에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타겟이었다. 북조선의 위협을 선동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고, 반정부 활동을 억눌려고 하였다. 김대중 등의 야당 정치가나 학생·노동자 등 반 군사 정권을 주장하여 데모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해 갔다. 그 중에도 「북의 간첩」으로 날조되어 처형된 사람들이 있다.

또, 적극적으로 반정부 활동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본보기」로 고문 당하고 사망한 케이스도 있었다. 1973년 8월의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부터 2달 후에 일어난 서울대학 교수 최종길 사건은 동 대학교수를 고문 풀에 사망시켜 「북의 간첩임을 자백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자살했다」고 허위의 발표를 함으로써 학생데모의 일시적인 진정화에 이용했다.

그러나 한국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민」을 「북의 간첩」으로 만들기는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최종길과 같이 유학 경험자 속에서 날조할 수 있는 후보자를 색출하게 되며, 주로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유학 경험자가 표적이 되었다. 그리고 유럽 유학 경험자보다 더 용이하게 날조 할 수 있었던 것이 「재외 국민」, 특히 조총련을 통해서 북조선과 간접적 접촉을 가질 수 있는 재일 한국인 이었던 것이다.

#재일 한국인 사회의 특성

재일 한국인 사회에는 한반도를 분단하고 있는 38 도선과 같은 경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북 각기에 대해 심퍼시를 느끼는 사람들이 완만한 경계속에서 공생하고 있는 것이 재일 한국인 사회이다. 예를 들면, 한 가정 안에 한국 · 조선 「국적」 또는 일본 국적을 소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더욱 학교, 혹은 사회에서 알게 된 친우끼리 실은 국적상으로는 남북으로 갈릴 일도 있다. 재일 한국인에게 있어서 조총련계의 친우는 적이 아니고 일본 사회에서 차별 받고 살아온 이웃, 같은 민족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에서 정보기관에 갑자기 연행되어 고문을 받고 「한국으로 오기전에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이름을 써라」고 강요 당하면 조총련 관계자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혹은 조총련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대학교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낸 것만으로도 정보기관은 일본에 있는 협력자로부터의 정보에 의해서 조총련과 관련시켜서 「북의 간첩」을 날조해 갔다.

예를 들면, 「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이번에 서울의 모습을 가르쳐 달라」라는 말을 듣고 「오케이」라고 대답하면, 그것은 [지령 사항].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면 [잠입].

이동을 위해 서울 시내의 교통 요금 등을 알아보면 [탐지·수집], 여름 방학에 일본에 돌아가면 [탈출], 오래간만에 친우에게 연락하면 [통신 연락], 서울의 모습을 알려주면 [보고]. 소위 말하는 간첩죄의 풀코스의 성립이다.

그들의 무죄가 증명되기 위해서는 약 30년의 세월이 필요하였다.

#진실 화해 위원회에 의한 진상 규명

노무현 정권하에서 2005년 5월에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이하, 진실 화해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때까지 김대중 정권하에서는 「4·3 제주도 사건 진상 규명법」, 「민주화 운동 보상법」, 「의문사 진상 규명법」 등이 제정되어 또, 김영삼 정권기의 「5·18 특별법」과 노태우 정권기의 「5·18 보상법」에 의해 광주 민주화 운동 탄압 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명예 회복 및 배상이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재일 한국인 간첩 날조 사건은 그러한 「과거 청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005년이 되어 겨우 재일 한국인 피해자에게도 진상규명·명예 회복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는 이 위원회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2006년 11월 30일, 이종수와 윤정현은 진실 화해 위원회에 진상 규명을 신청했지만 그들은 오오사카의 한국 영사관 내의 계시판에 붙어 있는 게시물을 보고 그 존재를 알았다고 한다. 만약 영사관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진상 규명을 신청하는 것조차 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또, 위원회의 존재를 안 피해자 중에는 현재의 일본에서의 평온한 생활이 깨어질 염려와 여전히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 쓰라린 과거를 생각해 내는 일의 고통 등으로 진상 규명 신청에 대하여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있었다.

2012년 8월 현재 재심과 관련하고 있는 피해자 중, 17명이 위원회에 진상 규명을 신청하고 있었으나, 그 중 6명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이 되어 4명에 대해서는 일부 진상 규명이 되었다. 또, 위원회가 신청을 수리했으나 조사가 개시되지 않은 채 위원회가 해산한 예가 2명이었다. 2010년 12월, 이명박 정권이 위원회를 해산시켰기 때문에 현재는 진상 규명을 구하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재심으로 된 무죄 선고

진실 화해 위원회에서 진상의 규명이 된 피해자들은 위원회의 권고를 근거로 법원에 재심 청구를 했다. 예를 들면, 2006년 11월 30일, 위원회에 진상 규명 신청을 한 이종수의 경우, 2008년 9월 23일에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① 보안 사령부가 불법 감금 상태에서 고문을 하여 혀위의 자백을 강제하고 ② 서울 지방 검찰청은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는 이종수의 호소를 무시한 채 기소하고 ③ 서울 형사 지방법원은 고문에 의한 혀위 자백이라는 이종수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통역의 신청도 거부하고 충분한 심리도 하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고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종합하고 이종수와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의

것은 재심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북조선에 간 사실이 있으면서도 그는 무죄가 된 것이다. 「판결문」은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으며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도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또, 이와 같은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성명 미상의 어떤 자가 북조선 또는 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와 접촉하여 본건 공소 사실 기재의 탈출, 잠입, 국가기밀 누설, 간첩 행위 미수의 각 범행을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불충분하며, 그밖 이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 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즉 북조선에 갔다는 사실보다 증거 자체의 신용성을 문제시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한 판결이다.

#사법부의 변화

또 하나 구말모의 소송에서 주목되는 점은 진실 화해 위원회 등에서의 조사 결과 없이도 재심이 개시되었다는 점이다. 이때까지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케이스는 어떤 형태든지 진실 화해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어 있었다. 그것이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의 근거의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구말모의 경우, 위원회의 조사 결과 없이 재심이 개시되었다. 이 이유는 「판결문」에서 추측할 수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본건 무죄 판결의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다. 본인이 북조선에 간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그 증언 자체가 임의성이 보증된 상태에서 한 것이라고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고 있다.

또 주목되는 점은, 이 임의성의 유무는 피고인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일련의 재일 한국인 간첩 날조 사건에 있어서의 큰 변화이다. 예를 들면, 이 사건 이전의 윤정현의 재심에 있어서는 진실 화해 위원회의 조사 보고서로, 고문에 의한 혀위 자백임이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 의거하여 신속하게 심리하도록 요구했다. 그와 비해 서울 지방법원은, 재심은 기존의 판결을 뒤엎는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재심 청구자는 심리속에서 하나 하나 과거의 판결을 뒤엎는 증명을 해 갈 일이 필요하다고 하여 결국 중인 고병천이 법정에 소환되었다. 즉, 입증 책임이 피해자 측에 과해지고 있었다. 입증 책임이 검찰 측에 과해진 것은 앞으로의 재심의 행방에 큰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다.

#「권력의 시녀」에 대한 반성

이명박 정권이 되면서 진실 화해 위원회가 해산이 된 현재, 행정에 있어서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곤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사법부의 대응을 고려하면 앞으로 어떤 정권이 탄생해도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앞장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사법부의 변화는 2005년 9월에 취임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정의의 회복과 사법의 독립」 결의 표명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그때까지 시효를 이유로 인정하지 못했던 최종길 유족의 국가 배상 청구가 인정받게 되고 또, 정치적

검토하도록」 유엔 법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의거하여 사정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 가는가에 대해서도 장차의 과제로 하고 싶다는 회답이었다.

이 재류 자격의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에 「요청」 할 방침이라고 한다. 윤정현과 김동휘, 담당 변호사 등 관계자가 2012년 7월 2일 한국 외교 통상부를 방문하고 간첩 날조 사건에 의해 특별 영주권을 상실한 피해자들의 특별 영주권 회복을 한국 정부로부터 일본 정부에 요청하도록 구하였다니, 담당자가 똑바로 검토하겠다고 회답하고 있다. 다만 외교 통상부가 피해자에 대해서 「인도적인 견지에서」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검찰은 윤정현의 재심을 담당한 검사가 「고문이 있었다고 할 지라도 간첩이었다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거나 사법부의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종수와 김원중 이외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상고라는 형태로 집요하게 저항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 정부내의 대응의 「혼란」이 계속되는 한, 일본 정부가 이 요청을 성취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닐까.

#국경을 넘은 한국「민주화」

식민지 지배 · 분단 체제의 희생자라고도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이지만, 사건에서 30년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 겨우 진상 규명, 명예 회복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90년, 95년에는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광주 민주화 운동 탄압 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 · 배상법이 제정되고 99년에는 민주화 운동 속에서 「북의 간첩」으로 날조되어 살해된 사람들, 또 공산주의 세력으로서 학살된 4·3 제주도 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법이, 그리고 2005년에는 재일 한국인 간첩 날조 사건을 포함하는 「모든 과거」가 진상 규명의 대상이 되는 진실화해법이 제정되어 있다.

즉, 90년대에는 주로 민주화 운동에 공헌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 99년부터는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사람들 뿐 아니라 「북의 간첩」으로서 군사 정권의 통치 수단의 희생이 된 한국 국내의 사람들이, 그리고 2005년이 되어 그 대상이 해외에까지 확대되어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한 결과, 「북의 간첩」으로 날조된 사람들, 그리고 재일 한국인 간첩 날조 사건의 희생자까지 확대되어 1987년의 「민주화」부터 4반세기의 시간을 넘어서 드디어 재일 한국인 피해자도 그 은혜를 받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에 수반되는 「이행기의 정의 (transitional justice)」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칭 약)

<번역 : 김오자>